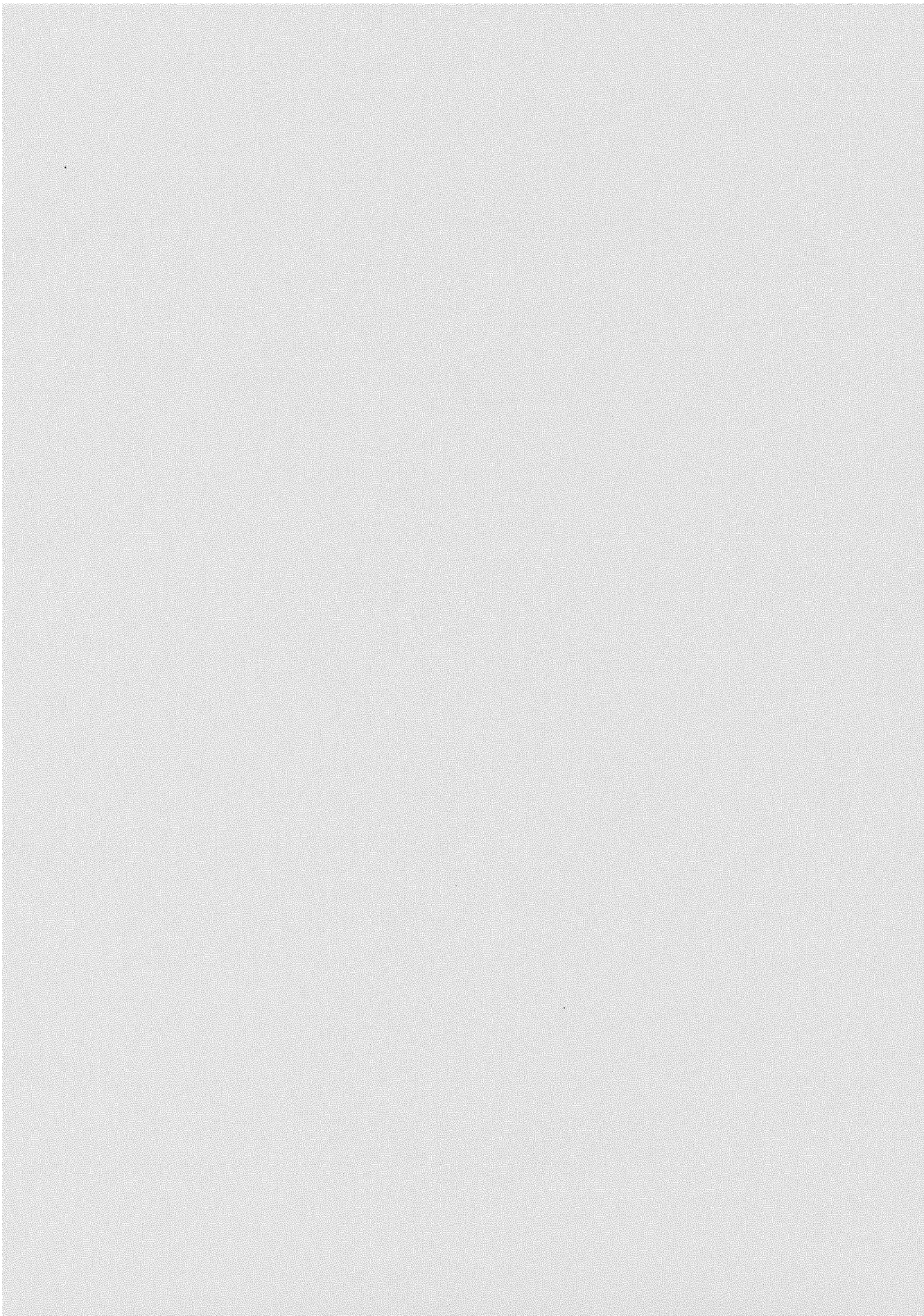


第147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2002.11.26.~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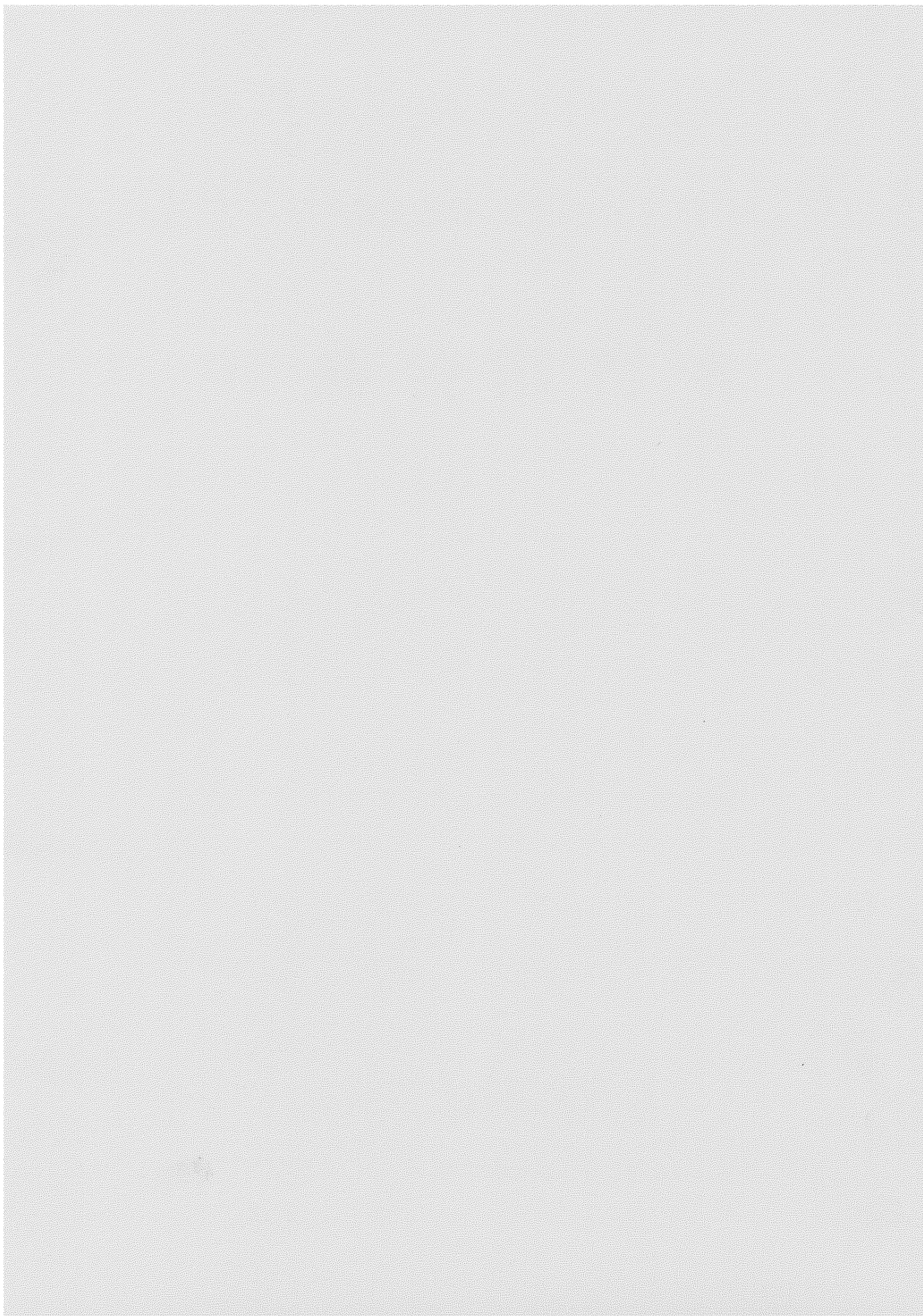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147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개회식	3
II. 제14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5
III. 제14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7
IV. 부 록	
1. 의사일정안	27
2.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9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7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3
5.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9
6. 청풍초·중통합운영학교위치변경안	95
7.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회변경계획안	97
8.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7
9.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9
10.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3
1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7
12.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1
13.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25

V. 별 책 부 록

-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안(별책 1)
-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별책 2)
- ▶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별책 3)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2년 11월 26일 (화요일) 16시 05분

開會式順(第147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대한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김왕년)

(16시 05분 개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왕년

지금부터 제14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16시 07분 폐식)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2년 11월 26일 (화요일) 16시 07분

議事日程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47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고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청풍초·중통합운영학교위치변경안
7.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회변경계획안
8.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
10.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47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고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7. 청풍초·중통합운영학교위치변경안(교육감 제출)
8.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회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9.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10.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의장 제의)
11.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의장 제의)

(16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충청북도교

[제147회-제1차 본회의]

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유선규 부교육감님은 교육부 출장으로, 신건환 공보감사 담당관과 오형균 시설과장께서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안내 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과보고

● 의장 이상일

그러면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옴)

● 의사과장 김용환

의사과장 김용환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년 11월 1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위원회 집회 요구가 있어 2002년 11월 18일 공고 제2002-10호로 제14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으며, 2002년 11월 16일 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과 청풍초·중통합운영학교위치변경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회변경계획안,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

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회기 의결안건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제146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신 2004학년도 초·중통합운영학교설치계획안 및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과 11월 1일 제146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신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002년 11월 1일자로 집행청에 이송하였습니다.

11월 4일 제146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동일자로 집행청에 이송하였으며, 또한 11월 7일자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에 동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집행청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47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회기결정의건

(16시 12분)

(16시 10분)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7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조례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일간은 의안관련 현장방문 및 소위원회 활동, 그리고 직속기관 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11월 30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4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고습에

● 의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고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 반창남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일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생명경영 품격행정을 펼치는 희망찬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고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폐지된 규제를 운용하고 민원처리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서류를 과다 징구하는 등 행정편의에 의해 집행되는 규제를 시정·보완 조치하라는 권고를 수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학원의

[제147회-제1차 본회의]

시설은 동일건물의 동일층을 원칙으로 하고 직상층 또는 직하층으로 이어진 건물에 시설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둘째,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 인원을 1.5㎡당 1명 이하로 하되, 토목·건축, 농림, 미용, 무용, 전통무용, 음악 교습 과정은 2㎡당 1명 이하로, 음악 중 피아노 교습과정은 4㎡당 1명 이하로 하였습니다.

셋째,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05시부터 23시까지, 독서실은 24시까지로 한 규정을 삭제하고, 넷째, 생활지도사를 채용 및 해임한 때에는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다섯째, 별표3의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 능력 인원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청주지부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05시부터 23시까지, 독서실은 24시까지로 하는 규정 삭제를 반대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이며, 규제개혁위원회 삭제지시와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안에 미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2)

(끝에 실음)

● 의장 이상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청풍초·중통합운영학교위치변경안

8.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회변경계획안

9.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6시 17분)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풍초·중통합운영학교위

치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공유 재산관리계획제5회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일 의장님, 그리고 교육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개최된 제14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교육위원님들께서는 항상 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휴직자가 휴직하였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실시할 수 없었던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여 연가실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일반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 계산방식

을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휴직일수를 월로 환산하여 그 월수에 해당하는 연가일수만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일반 휴직자의 연가 실시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3)

(끝에 실음)

둘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각종 제증명 발급이 전국의 모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에 의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증명수수료는 현행과 같이 300원으로 하되, 외국문의 경우는 600원으로 하고, 기타 일부 자구를 수정·보완하는 것입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4)

(끝에 실음)

셋째,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7회-제1차 본회의]

2003학년도에 신설 개교되는 흥덕고등학교, 서원고등학교, 주성고등학교, 원평중학교, 서경중학교, 칠금중학교, 탄금중학교, 내토중학교, 장락초등학교, 용성초등학교 등 10개교를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에 추가하여 sáp입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에 의거 2003년 9월에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목계초등학교를 엄정초등학교목계분교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251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본 조례에 추가하면서 내년에 설립되는 산성유치원과 장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sáp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참 조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
조례안(별첨 5)

(끝에 실음)

넷째, 청풍초·중통합운영학교위치변경안입니다.

지난 10월 30일 개최된 제14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된 청풍초·중통합운영학교 설치계획의 위치를 여러 교육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천중청풍분교장에서 청풍초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변경안을 말씀드리면, 당초 청풍초등학교는 부지가 협소하고 증축여건이 좋지 않아 청풍초등학교를 제천중청풍분교

장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제천중청풍분교장의 건물방향이 북향으로 채광여건이 좋지 않고, 또한 동일건물이라도 동고서저 상태로서 교육시설 여건이 좋지 않아 다소 교실증축 부지가 협소하더라도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교육환경이 양호한 청풍초등학교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참 조 : 청풍초·중통합운영학교위치변경안(별첨 6)

(끝에 실음)

다섯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회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써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내역은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따른 청주 중앙초등학교 교실증축, 신설학교로서 2004년 3월 1일 개교예정인 사천초등학교 외 3교의 다목적교실, 기존의 이월초등학교 외 1교의 다목적교실 신축 및 음성 생극초등학교 외 2개교의 도서관 신축 등 총 8,775㎡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에 소요되는 투자액은 국고 29억 9,800만원과 자체재원 34억 3,500만원 등 총 64억 3,300만원으로 2002년도 제3

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 참 조 :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회변경계획안(별첨 7)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가로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비는 지원 목적대로 편성하였고, 2004년도 신설되는 초등학교에 다목적실과 청주시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수용시설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증액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37억 6,000만원에서 244억 6,000만원이 증액된 1조 582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239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양여금 14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폐지학교 매각, 도로편입 보상 등 재산매각과 위약금 등 자체수입 19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사업으로 2003년도 상환 계획인 지방채 원금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2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태풍 루사 등의 피해자녀 학자금지원 및 피해복구비로 2억 1,000만원, 시·청각 장애학생 의사소통 능력 신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 보완도구 구입비로 4억 9,000만원,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2억원, 실업계 고교의 직업교육 내실화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한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비로 12억 3,000만원,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양질의 교육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교수·학습지원센터 구축비로 1억 6,000만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도서실 확충, 도서관 및 다목적교실 신축비로 47억 3,000만원, 농·어촌 근무 교직원 이 교육활동 및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사택신축 및 보수비로 9억 2,000만원,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안전공제회 기금보조로 1억 1,000만원, 기타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단위학교 현안사업 지원으로 7,000만원,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총 8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교육정보화 부문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받은 지원금으로 각급 학교 ICT모델 학급 인프라 구축

[제147회-제1차 본회의]

을 위한 사업비로 3억원, 발명에 대한 흥미 유발 및 과학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발명공작실 설치비로 5,000만원,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에 따른 경비로 3억 1,000만원 등 총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재원 사업으로 2004년도 신설되는 초등학교 6개교에 다목적실을 확충하고자 32억 6,000만원, 중학교 신설비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여 청주시내 공동주택 밀집지역 초등학교 과밀학급을 해소하고자 수용시설 증축비로 10억 6,000만원, 학생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여장학금 부담금 등 집행잔액 36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재해피해 긴급복구를 위하여 예비비로 사용한 재원과 교부금 및 자체수입 등 122억 6,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연도 내에 완성하기 어려운 사업들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금회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은 지원 목적대로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

로 운영하고자 집행잔액 일부를 감액 조정하여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 참 조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별첨 8)
(끝에 실음)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서안(별책 1)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별책 2)
-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별책 3)

● 의장 이상일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

(16시 29분)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를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4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심사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개정안은 즉시 조례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즉시 예산·결산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4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고규강 위원님과 김남훈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열린 제8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 고등학교 선수들이 금메달 33개, 은메달 19개, 동메달 33개, 도합 85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메달 순위 고등부 전국 3위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펼쳐진 제48회 부산 서울간 대역전 경주대회에서 충북이 종합우승을 차지해 '98년 이후 5연패를 달성하였는 바, 이는 충북체육고등학교 1학년 신상민 선수가 최우수선수상, 2학년 조장현 우수신인상

11.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건

(16시 30분)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

[제147회-제1차 본회의]

을 시상하는 등 고등학교 선수들의 주도적인 역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북의 열악한 체육환경 속에서도 부단한 연습과 노력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선수, 지도교사 및 코치, 그리고 학교장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학교 체육발전을 위한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천호 교육감님과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4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위원 김남훈, 송대헌, 이기수,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1명

교육감 김천호, 교육국장 반창남,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초등교육과장 정무, 중등교육과장 임흥빈,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이기석, 총무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2)
-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3)
-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로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4)
-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5)
- ▶ 청풍초·중통합운영학교위치변경안(별첨 6)
- ▶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회변경계획안(별첨 7)
-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별첨 8)

※ 별책부록

-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안(별책 1)
-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별책 2)
- ▶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별책 3)

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2년 11월 30일 (토요일) 11시 02분

議事日程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고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청풍초·중통합운영학교위치변경안
6.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회변경계획안
7.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고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청풍초·중통합운영학교위치변경안(교육감 제출)
6.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회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7.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11시 02분 개의) 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

● 의장 이상일

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임흥빈 중등교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충청북도교

과장께서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성적

[제147회-제2차 본회의]

표 인수 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3분)

● 의장 이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김남훈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안건별로 각각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나옴)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남훈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남훈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지난 11월 16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2차에 거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외 주요내용은 이미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2년 4월 18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일반 휴직자의 복직시 연가일수 산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그 개정내용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9)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전국초·중등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에서의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를 통일시켜 수수료 격차로 인한 민원의 발생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내용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10)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학교를 신설하고 농촌 교육발전과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기 설치되어 운영 중인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도립학교설치조례에 포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내용이 적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11)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학원설립·운영및과의교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법령에 근거가 없으나 폐지된 규제를 운영하고 민원처리시 법령에 근거 없는 서류를 과다 징구하는 등 행정편의에 의해 집행되는 규제를 시정 보완 조치하라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05시부터 23시까지, 독서실은 24시까지로 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에 대하여 향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12)

(끝에 실음)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의안심사와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김남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남훈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대로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신중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개정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

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요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요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4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풍초·중통합운영학교위치변경안

(11시 12분)

● 의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풍초·중통합운영학교위치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풍초·중통합운영학교위치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5항 청풍초·중통합운영학교위치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회변경계획안

(11시 13분)

● 의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회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회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6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회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14분)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송대헌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나옴)

●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송대현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송대현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11월 16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 회부되어 2차에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쪽의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되는 세입재원의 교부목적과 이행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바, 본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337억 6,351만 2,000원보다 244억 5,842만원이 증액된 1조 582억 2,19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225억 3,671만 7,000원과 지방자치단체 교특회계부담수입 19억 2,170만 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관별 재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학교교육에 100억 2,216만 7,000원, 교육행정에 10억 5,808만 5,000원, 기타 경비에 150억 1,208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급여·복지 16억 3,391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관별 내역과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교부금과 지원금, 자체수입 등의 재원으로 학생수용시설 확충, 교육환경개선 사업 지속적 추진, 실업계고 직업교육 확충, 지방채 원금상환 등을 중점적으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적정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 인적자원개발사업에 추진함에 있어 조기에 소요예산과 필요 인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하는 등 자체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다목적교실, 도서관 등의 시설 배정 시 가능한 한 지역간 학교 급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사

료됩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위원 모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별첨 13)

(끝에 실음)

● 의장 이상일

송대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

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소위원회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14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폐회)

[제147회-제2차 본회의]

0 출석위원 : 6명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위원 김남훈, 송대현, 이기수,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3명

교육감 김천호,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반창남,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초등교육과장 정무,

중등교육과장 임흥빈,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이기석,

총무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9)
-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10)
-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11)
- ▶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12)
-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별첨 13)

제14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2. 12. .

의 장 이 상 일 이 상일

위 원 고 규 강 

위 원 김 남 훈 김남훈

의사국장 이 상 기 이상기

議 事 日 程 (案)

第147회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2002. 11. 26. ~ 11. 30.(5日間)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11월 26일(화) (15:00) (16:00)	<input type="checkbox"/> 교육위원협의회 <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1. 제147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회 기 : 2002. 11. 26. ~ 11. 30. (5일간) 2.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의교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요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5.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6. 청풍초·중통합운영학교위치변경안(제안설명) 7.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회변경계획안(제안설명) 8.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9.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 10.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 예산·결산소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산 회	교육위원실
11월 27일(수) ~ 11월 29일(금)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 예산·결산소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직속기관 방문 • 교육과학연구원, 학생회관 <input type="checkbox"/> 의안관련 현장방문	본회의 휴회
11월 30일(토) (11:00)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의교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요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청풍초·중통합운영학교위치변경안 6.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회변경계획안 7.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input type="checkbox"/> 폐 회	

(별첨 2)

의안번호	제 147-1 호
의결 연월일	2002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2년 " 월 16 일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1-1
----------	-------

제출년월일 : 2002. 11. 16.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 계 부 서 : 평생교육체육과

□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폐지된 규제를 운용하고, 민원 처리 시 법령에 근거 없는 서류를 과다 징구 하는 등 행정편의에 의해 집행되는 규제를 시정보완 조치하라는 권고를 수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학원의 시설은 동일건물의 동일층을 원칙으로 하고, 직상층 또는 직하층으로 이어진 2개층 이상에 시설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안 제2조제5항).
-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을 1.5제곱미터 당 1명 이하로 하되, 토목·건축, 농림(동물), 미용, 무용·전통무용, 음악 교습과정은 2제곱미터 당 1명 이하로, 음악중 피아노 교습과정은 4제곱미터 당 1명 이하로 함 (안 제3조제1항).
-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05:00부터 23:00까지(독서실 24:00)로 한 규정 삭제 (안 제4조제1항).
- 생활지도사를 채용 및 해임 한 때에는 관할교육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 삭제 (안 제7조).
- [별표 3]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 능력인원 삭제.

□ 개정근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2001.4.7 법률 제6463호)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2001.7.7. 대통령령 제17296호)
- 국무조정실 국무규제 05090-1311 (2002. 07. 24.)

입법예고결과

-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05:00부터 23:00까지(독서실24:00)로 한 규정 삭제 (안 제4조제1항)를 반대하는 의견제출
- 반대의견 제출 기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청주시부
- 반영여부 : 입법안에 미 반영
- 사 유 :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이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삭제지시 수용

개정조례안 : 붙임

참고사항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중 “별표 3과 같이 한다.”를 “1.5제곱미터 당 1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목·건축, 농림(동물), 미용, 무용·전통무용, 음악 교습과정은 2제곱미터 당 1명 이하로, 음악 중 피아노 교습과정은 4제곱미터 당 1명 이하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강사등의 채용 및 해임통보”를 “강사의 채용 및 해임통보”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중 “강사 및 생활지도사를”을 각각 “강사를”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등록된 학원 또는 신고된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설립 및 변경신청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시설기준) ① ~④ (생략)</p> <p>⑤ <u>학원시설은 동일건물의 동일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층에 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생활지도 및 교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직상층 또는 직하층으로 이어진 2개층 이상에 시설할 수 있다.</u></p>	<p>제2조(시설기준) ① ~④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제3조(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 ①</p> <p>-----</p> <p>-----</p> <p>-----</p> <p>----- 1.5제곱미터 당 1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목·건축, 농림(동물), 미용, 무용·전통무용, 음악 교습과정은 2제곱미터 당 1명 이하로, 음악중 피아노 교습과정은 4제곱미터 당 1명 이하로 한다.</p>	<p>제3조(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 ①</p> <p>-----</p> <p>-----</p> <p>-----</p> <p>----- 1.5제곱미터 당 1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목·건축, 농림(동물), 미용, 무용·전통무용, 음악 교습과정은 2제곱미터 당 1명 이하로, 음악중 피아노 교습과정은 4제곱미터 당 1명 이하로 한다.</p>	<p><삭제></p>
<p>제3조(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 ②</p> <p>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은 별표 2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한다.</p>	<p>② 제1항의 일시 수용능력 인원은 학원의 시설면적 증가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다만, 별표2의 설비 및 교구중에서 증원되는 인원의 교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설비 및 교구를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제4조(학원의 교습시간) 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다만,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00부터 04:00까지는 출입을 금한다.</p>	<p>② <삭제></p>	<p><삭제></p>	<p><삭제></p>	<p>②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 통보) ①학원의 설립·운영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 및 생활지도사를 채용한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관할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 통보된 강사 및 생활지도사를 해임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관할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7조(강사의 채용 및 해임 통보) ①----- ----- 강사를 ----- ----- -----</p> <p>②----- 강사를----- ----- -----</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등록된 학원 또는 신고된 교습소 및 개인과의교습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것으로 본다.</p> <p>②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설립 및 변경신청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3] <u>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u> <u>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 인원</u></p>		<삭제>		
분 야	계 열	교 습 과 정	일시 수용 능력 인원	비 고
직 업 기 술 반 기 술	산 업 기 술	1. 기 계	40	실습실 60m ² 기준
		2. 자동차		
		· 자동차정비	40	실습실 60m ² 기준
		· 중기운전	30	실습실 90m ² 기준
		· 중기정비	30	실습실 45m ² 기준
		3. 화공및세라믹	40	실습실 45m ² 기준
		4. 전 기	40	실습실 45m ² 기준
		5. 전 자	40	실습실 45m ² 기준
		6. 항공(항공정비)	30	실습실 60m ² 기준
		7. 토목, 건축	20	실습실 45m ² 기준
		8. 의복·섬유		
		· 양재·한복	30	실습실 45m ² 기준
· 수예·자수	30	실습실 45m ² 기준		
9. 농림(동물)	20	실습실 45m ² 기준		
10. 환경(냉동, 열관리,냉난방)	40	실습실 45m ² 기준		
11. 공 예				
· 공예·도예	30	실습실 45m ² 기준		
· 귀금속가공· 보석감정	30	실습실 45m ² 기준		
12. 안전관리	40	실습실 45m ² 기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분야	계열	교습과정	인사 요원 인원	비 고							
산업응용기술	13. 디자인 · 패션디자인 · 산업디자인 14. 이·미용 · 미 용 · 이 용 15. 식음료품 · 조 리 · 제과·제빵 · 조 주 16. 인 쇄 17. 사 진 18. 피아노조율	40	실습실 45㎡기준								
		30	실습실 45㎡기준								
		20	실습실 45㎡기준								
		30	실습실 45㎡기준								
		40	실습실 45㎡기준								
		40	실습실 45㎡기준								
		40	실습실 45㎡기준								
		40	실습실 45㎡기준								
		30	실습실 45㎡기준								
		30	실습실 45㎡기준								
		정보처리기술	19. 통신기기 20. 정보통신 (정보처리) 21. 컴 퓨 터	40	실습실 45㎡기준						
				30	실습실 45㎡기준						
				30	실습실 45㎡기준						
		간호보조기술 문화관광	22. 간호조무사 23. 영상·음반 24. 관 광	40	실습실 60㎡기준						
				30	실습실 45㎡기준						
				40	실습실 45㎡기준						
				30	실습실 45㎡기준						
		경영실무	사무관리	30	실습실 45㎡기준						
40	실습실 45㎡기준										
예능	27. 무용, 무용 전통무용 28. 서 예 29. 음악(피아노) 30. 미 술 31. 모델, 연극 32. 바 둑 33. 꽃기예, 꽃꽂이	20	실습실 45㎡기준								
		30	실습실 45㎡기준								
		30	실습실 45㎡기준								
		30	실습실 45㎡기준								
		30	실습실 45㎡기준								
		30	실습실 45㎡기준								
		30	실습실 45㎡기준								

(별첨 3)

의안번호	제 142 호
의결 년 월 일	2002. (제 회)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2002. 11. 16.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7-2
----------	-------

제출년월일 : 2002. 11. 16.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련부서 : 총 무 과

개정이유

- 휴직후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일반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골자

-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 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 토록함(안 제19조제2항).
-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안 제21조제6호).

개정근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조례안 : 붙임

참고사항

- 신·구 조문 대조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에서 공제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text{휴직자의 연가일수} = \frac{\text{당해연도휴직기간(월)}}{12(\text{월})} \times \text{당해연도의 연가일수}$$

제20조제1항 후단중 “제19조제3항”을 “제19조제4항”으로 한다.

제2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휴직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신 설></p>	<p>제19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p> <p>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frac{\text{휴직자의 연가 일수} \times \text{당해연도 휴직기간(월)}}{12(\text{월})} \times \text{당해연도의 연가일수}$ </p>
<p>② (생략)</p> <p>③ (생략)</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20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u>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u></p>	<p>제20조(병가) ①</p>
<p>1·2. (생략) ②·③ (생략)</p>	<p>1·2.(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1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p>제21조(공가)</p>
<p>1. ~ 5. (생략) 6. <u>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u></p>	<p>1. ~ 5. (현행과 같음) 6. <u>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을 때</u></p>
<p>7. ~ 9. (생략) <u><신설></u></p>	<p>7. ~ 9. (현행과 같음) 부 _____ 칙 <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별첨 4)

의안번호	제 147-3 호
의결 연월일	2002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2년 " 월 / 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9-3
----------	-------

제출 연월일 : 2002. 11. 16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 계 부 서 : 총무과

개정이유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민원인이 거주하는 인접 지역의 전국 초·중등학교 및 교육행정기관등에서 제증명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므로 시·도교육청간 상이한 제증명수수료를 통일시켜 수수료 격차로 발생될 민원을 해소

주요골자

제증명수수료는 현행과 같이 1건당 300원으로 하고 외국문의 경우 600원으로 함(안 제2조제2항).

개정조례안 : 붙임

개정근거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 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 개정 표준안
[교육인적자원부 정추81324-272(2002.8.27)]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음(2002. 9. 6~9.2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수수료의 징수금액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다만, 외국문으로 발행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의 해당금액의 2배를 징수한다.

제4조제1항중 “공개정보”를 “정보공개”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수수료 징수 금액

(단위:원)

구 분	종 류	기준	수수료	비 고
1. 중학교 및 고등학교 배정수수료	1. 중학교 배정수수료	1통	300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 제73조, 제89조
	2.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수수료	1통	300	
2.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 수수료	1. 응시수수료	1인당	25,000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9조, 제21조
	가. 일반시험 나. 실기평가가 포함된 시험	1인당	35,000	
3.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1. 응시수수료	1인당	10,000	-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 고시규칙 제12조 -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 고시규칙 제17조
	2. 성적증명서	1통	300	
	3. 합격증명서	1통	300	
	4. 과목합격증명서	1통	300	
4. 제증명수수료	1. 신원에 관한 증명			지방자치법 제128조
	가. 재직,경력,퇴직에 관한 증명	1건	300	
	나. 연수 및 이수에 관한 증명	1건	300	
	다. 각종 수상에 관한 증명	1건	300	
	라. 각종 고시, 시험(합격)증명	1건	300	
	마. 기타 신원에 관한 증명	1건	300	
	2. 학적에 관한 증명			
	가. 입학 및 합격에 관한 증명	1건	300	
	나. 재학 및 재적에 관한 증명	1건	300	
	다.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증명	1건	300	
	라. 퇴학 및 제적에 관한 증명	1건	300	
	마. 수료(예정)에 관한 증명	1건	300	
	바. 졸업(예정)에 관한 증명	1건	300	
	사. 성적 증명	1건	300	
	아. 생활기록부(학적부) 증명	1건	300	
	자. 기타 학적에 관한 증명	1건	300	
	3. 재무회계에 관한 증명			
	가. 물품(용역)관련 각종 사실, 실적 증명	1건	300	
	나. 공사관련 각종 사실, 실적증명	1건	300	
	다. 공유재산에 관한 증명	1건	300	
	라. 교육비 납입 증명	1건	300	
	마. 학비 감면 증명	1건	300	
	바. 원천징수에 관한 증명	1건	300	
	사. 기타 재무회계에 관한 증명	1건	300	
	4. 학원,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증명	1건	300	

신 ·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수수료) ①(생략) ②<u>수수료의 징수금액은 별표1, 별표2와 같다.</u></p> <p>제4조(수수료 징수 방법) ① 수수료의 징수는 증명 및 <u>공개정보</u>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자, 시험·고시 및 배정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자로부터 [별표1], [별표2]의 수수료 징수금액에 의하여 징수하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u><신설></u></p>	<p>제2조(수수료) ①(현행과 같음) ②<u>수수료의 징수금액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다만, 외국문으로 발행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의 해당금액의 2배를 징수한다.</u></p> <p>제4조(수수료 징수방법) ① <u>정보공개</u> . ②(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분	종 류	기 준	수료	비 고	구분	종 류	기 준	수료	비 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0 신원에 관한 사항				4	1. 신원에 관한 증명			지방 자치 법 제 128 조
	- 재직·경력 및 퇴직에 관한 사항	1 건	300			가. 재직·경력·퇴직에 관한 증명	1 건	300	
제 증명 수수료	- 연수 및 이수 등에 관한 사항	1 건	300		나. 연수 및 이수에 관한 증명	1 건	300		128 조
	- 졸업(예정), 재학(계적), 성적등에 관한 증명	1 건	300		다. 각종 수상에 관한 증명	1 건	300		
	<신 설>				라. 각종 고시, 시험(합격)증명	1 건	300		
					마. 기타 신원에 관한 증명	1 건	300		
	0 회계에 관한 증명				2. 학적에 관한 증명				
	- 납품 및 공사 사실에 관한 증명	1 건	300		가. 입학 및 합격에 관한 증명	1 건	300		
	- 위천징수등에 관한 사항	1 건	300		나. 재학 및 재직에 관한 증명	1 건	300		
	0 기타 공부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 건	300		다.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증명	1 건	300		
	<신 설>				라. 퇴학 및 제적에 관한 증명	1 건	300		
					마. 수료(예정)에 관한 증명	1 건	300		
					바. 졸업(예정)에 관한 증명	1 건	300		
					사. 성적 증명	1 건	300		
					아. 생활기록부(학적부) 증명	1 건	300		
					자. 기타 학적에 관한 증명	1 건	300		
					3. 재무회계에 관한 증명				
					가. 물품(용역)관련 각종 사실·실적 증명	1 건	300		
					나. 공사관련 각종 사실·실적 증명	1 건	300		
					다. 공유재산에 관한 증명	1 건	300		
					라. 교육비 납입 증명	1 건	300		
					마. 학비 감면 증명	1 건	300		
					바. 위천징수에 관한 증명	1 건	300		
					사. 기타 재무회계에 관한 증명	1 건	300		
					4. 학원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증명	1 건	300		

(별첨 5)

의안번호	제 147-4 호
의결 년 월 일	2002년 11월 일 (제 회)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 출 년 월 일	2002년 11월 16일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7-4
----------	-------

제출년월일 : 2002. 11. 16.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련부서 : 기획관리과

□ 개정사유

- 2003학년도에 유치원 2원, 초등학교 2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3교 등 12개교를 신설개교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계획에 따라 1개교의 본교가 분교장으로 개편되어 도립학교설치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며,
- 기 설치되어 운영중인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도립학교 설치조례에 포함코자 함.

□ 주요골자

- 설치대상 학교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별표6을 신설함(제1조, 제2조).
- 2003. 3. 설립되는 흥덕고등학교, 서원고등학교, 주성고등학교 및 원평중학교, 서경중학교, 칠금중학교, 탄금중학교, 내도중학교를 삼입하고자 함(별표1, 별표3).
- 2003. 3. 설립되는 장락초등학교와 2003. 9. 설립되는 용성초등학교를 삼입하고 2003. 9.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목계초등학교를 업정초등학교 목계분교장으로 변경함(별표4).
- 2003. 3. 설립되는 산성유치원, 장락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및 기 설치되어 운영중인 초등학교 병설유치원(251개 유치원)을 삼입하고자 함(별표6).

□ 개정근거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

조 례 안 : 붙임

참고사항 : 붙임

○ 학교신설(고등학교 3교, 중학교 5교, 초등학교 2교, 단설유치원 1원, 병설유치원1원)

명 칭	위 치	개교연월일	신설사유
홍덕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457번지	2003. 3. 1.	과밀해소
서원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79번지	"	과밀해소
주성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364번지	"	과밀해소
원평중 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362번지	2003. 3. 1.	과밀해소
서경중 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83번지	"	과밀해소
칠금중 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084번지	"	과밀해소
탄금중 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822번지	"	과밀해소
내토중 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장락동 687-1번지	"	과밀해소
용성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840번지	2003. 9. 1.	용암2택지개발지 구유입학생수용
장락초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장락동 626-9번지	2003. 3. 1.	과밀해소
산성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438번지	2003. 3. 1.	유아교육기회확대
장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장락동 626-9번지	2003. 3. 1.	

○ 소규모학교 통·폐합

-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개편(1교)

개편전 명칭	개편후 명칭	위 치	개편년월일
목계초등학교	엄정초등학교 목계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111번지	2003. 9. 1.

○ 기 설치된 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세부내역 : "별표6" 과 같음

○ 신규조문대조표

○ 관계법령발췌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이하 “도립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를 “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이하 “도립학교”라 한다)을 설치한다”로 한다.

제2조 중 “별표 1 내지 별표 5 와 같다” 를 “별표 1 내지 별표 6 과 같다”로 하고, “별표 1·별표 3·별표 4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용성초등학교, 엄정초등학교목계분교장 및 엄정초등학교목계분교장병설유치원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유치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 별표 1 】

고 등 학 교 (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청주여자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534번지
충북인터넷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496번지
금 천 고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4-6지
청주농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322번지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번지
상 당 고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33번지
주 성 고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364번지
청 주 고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869번지
충 북 고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233번지
충북예술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290번지
청주의국어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444번지
흥 덕 고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457번지
서 원 고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79번지
충북체육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808번지
충북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666번지
청주중앙여자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27번지
충북전산기계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57번지
충 주 고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558번지
충주여자고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용산동 2060번지
충주여성여자고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526-1번지
충주농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72번지
충주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용산동 453번지
주 덕 고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130-3번지
제 천 고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162번지
제천여자고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서부동 740번지
제천농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동현동 15-3번지
의림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고명동 765번지

명 칭	위 치
제천상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동 182-3번지
제천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 360번지
충북과학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상야리 산 4-23번지
미원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내산리 218-2번지
부강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문곡리 997-1번지
오창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괴정리 7-3번지
보은여자고등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116-2번지
보은정보고등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성주리 171-2번지
보은자영고등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100번지
옥천고등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15-4번지
옥천상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247번지
청산고등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백운리 333-1번지
영동고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72-7번지
영동농공고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42-1번지
황간고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 431번지
학산정보고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 902번지
진천고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590번지
진천상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662-1번지
진천농공고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166번지
광혜원고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520번지
괴산고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201번지
증평정보고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초중리 11-8번지
증평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증천리 620번지
목도고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360번지
음성고등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503-7번지
금왕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103번지

명 칭	위 치
단 양 고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324번지
단 산 고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리 311번지
단양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58번지

【 별표 3 】

중 학 교 (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청 주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8번지
주 성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동 133번지
청주중앙여자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29-5번지
청 주 동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47-5번지
청 주 중앙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61-174번지
청 운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73-48번지
울 량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81-6번지
용 암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81번지
원 봉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100번지
청주여자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2동 6-3번지
청 주 남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124-3번지
수 곡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1003번지
서 원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486-3번지
가 경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445번지
봉 명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2동 1305번지
남 성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219-15번지
경 덕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0번지
복 대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2608번지
원 평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362번지
서 경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83번지
충 주 중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192번지
충주예성여자중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산 532-2번지
충 일 중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안림동 1083-4번지
충주여자중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 369-1번지
충주중앙중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2동 1088번지
칠 금 중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084번지
탄 금 중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822번지
충주중앙중학교 가금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361-7번지
주 덕 중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130-3번지

명 칭	위 치
수 안 보 중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상모면 운천리 51번지
신 니 중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신청리 산 16-1번지
노 은 중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368번지
양 성 중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양성면 용포리 172번지
중 원 중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507-1번지
산 척 중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718-2번지
제 천 중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서부동 251번지
제천중학교 청풍분교장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산 6번지
제 천 동 중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동 21번지
제천여자중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71-1번지
의림여자중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49-2번지
내 토 중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장락동 687-1번지
봉 양 중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장평1리 864-1번지
수 산 중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609번지
한 송 중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753번지
백 운 중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570번지
송 학 중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1100-2번지
제천덕산중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425번지
미 원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281-3번지
문 의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 108-2번지
부 강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500번지
오 창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창리 151-4번지
내 수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마산리 1번지
가 덕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수곡리 255번지
현 도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256-3번지
옥 산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77-3번지
보 은 중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30번지
보은여자중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116-2번지

명 칭	위 치
보 덕 중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단부면 하장리 27번지
원 남 중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내망리 653번지
회 인 중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회북면 중앙리 130번지
속 리 중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상판리 87번지
내 북 중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화전리 5-1번지
옥 천 중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63번지
옥천여자중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55-2번지
청 산 중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백운리 333-3번지
이 원 중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559번지
안 내 중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인포리 289번지
영 동 중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9-1번지
용 문 중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용산리 104번지
황 간 중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 526-1번지
상 촌 중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유곡리 467번지
학 산 중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 902번지
진 천 중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462번지
진천여자중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343번지
광 해 원 중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512번지
덕 산 중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566번지
이 월 중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455-55번지
백 곡 중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사송리 476-1번지
괴 산 중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165번지
괴 산 북 중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725번지
증 평 중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증천동 600번지
증평여자중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초중리 11-8번지
연 풍 중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488번지
목 도 중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360번지

명 칭	위 치
청 천 중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선평리 155번지
송 면 중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191번지
장 연 중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562번지
칠 성 중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사평리 240번지
감 물 중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광전리 산 85번지
음 성 중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274-3번지
음성여자중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830-3번지
무 극 중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23-2번지
대 소 중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 613-7번지
삼 성 중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431-1번지
감 곡 중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890-3번지
단 양 중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222번지
매 포 중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118번지
단 성 중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상방리 79-1번지
가 곡 중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435번지
단 산 중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리 311번지
영 춘 중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 496-1번지
별 방 중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별방리 540번지

【 별표 4 】

초 등 학 교 (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주 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48 1번지
교 동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84번지
용 암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103번지
상 당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62번지
석 교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10번지
중 앙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4번지
청 남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127번지
덕 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656번지
율 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034번지
우 암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137번지
덕 별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61-10번지
용 담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186번지
용담초등학교현양원분교장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71-1번지
청주내덕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 61번지
금 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213-1번지
북 일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428번지
운 동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430번지
새 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00번지
원 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328번지
용 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840번지
한 별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560번지
남 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219-1번지
서 원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북대동 977번지
북 대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북대동 709-4번지
모 충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372번지
운 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543-7번지
흥 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865번지

명 칭	위 치
창 신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351번지
사 직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2동 38-4번지
강 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121-1번지
내 곡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내곡동 10-2번지
서 촌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촌동 183번지
봉 명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1동 205번지
봉 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정2동 2141번지
한 솔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322번지
수 곡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779번지
가 경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443번지
풍 광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172번지
분 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198번지
경 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13번지
원 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63번지
경 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4번지
진 흥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31번지
남 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09번지
증 안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10번지
개 신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637번지
동 주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272번지
충주교현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1동 339-1번지
충주성남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1동 293번지
충주예성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2동 383-1번지
충주남산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용산동 2109번지
충주삼원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11-1번지
단 월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단월동 513-19번지
목 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동 577-1번지
달 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용두동 410-1번지
달천초등학교매현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매현리 480번지
남한강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동 1924번지

명 칭	위 치
충주중앙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003번지
충주대림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동 181번지
연수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232번지
탄금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824번지
칠금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727번지
충주용산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용산동 1671번지
세성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147번지
수안보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상모면 안보리 598번지
수회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상모면 수회리 672번지
대소원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본리 569-15번지
주덕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72번지
덕신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제내리 265-1번지
용원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용원리 245-3번지
동락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문락리 126번지
노은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연하리 535-2번지
노은초등학교수상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안락리 119-1번지
양성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양성면 용대리 258-1번지
강천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양성면 목미리 89-2번지
능암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양성면 둔산리 11-5번지
가금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212-1번지
가흥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582-8번지
금가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도촌리 400-1번지
오석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유송리 226-3번지
동량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426-1번지
대미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517번지
산척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1282-1번지
엄정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용산리 460번지
엄정초등학교목계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111번지
소태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오량리 199번지

명 칭	위 치
야 동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야동리 487번지
동 명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명동 68번지
의 립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동 186번지
남 당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영천동 760번지
남 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남천동 260번지
화 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화산동 606번지
홍 광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 396-1번지
두 학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흑석동 436번지
명 지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명지동 46번지
제천중앙초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625번지
용 두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405번지
신 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동 212-7번지
장 락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장락동 626-9번지
봉 양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921번지
왕 미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757번지
금 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294번지
청 풍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44-3번지
수 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609번지
제천덕산초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425번지
한 송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753번지
백 운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600번지
화 당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 84-1번지
송 학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1164-2번지
입 석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입석리 609-2번지
남 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낭성면 이목리 108-1번지
낭성초등학교갈산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낭성면 갈산리 341-1번지
미 원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298-3번지
미원초등학교금관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금관리 306-1번지
가 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125번지
가덕초등학교상야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상야리 351-1번지

명 칭	위 치
행정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행정리 29-1번지
남일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321-33번지
남일초등학교두산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106-1번지
신송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신송리 411번지
동화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화당리 361-1번지
남이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대련리 255번지
갈원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갈원리 143-1번지
문의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 228번지
문의초등학교도원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두모리 243번지
현도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달계리 548-1번지
옥포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 622-4번지
부강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432-3번지
외천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 294번지
강내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348-1번지
강외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60-1번지
상봉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상봉리 242-1번지
만수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163번지
옥산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223번지
옥산초등학교소로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 313-1번지
오창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장대리 238번지
오창초등학교가좌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가좌리 129번지
오창초등학교유리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유리 394번지
각리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각리 112-1번지
북이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내추리 10-2번지
석성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내둔리 344번지
대길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228번지
내수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마산리 171번지
비상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비상리 200번지
수성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263-1번지
수성초등학교구성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구성리 265번지

명 칭	위 치
삼 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56-3번지
동 광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54-1번지
동광초등학교학림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중동리 9-1번지
중 곡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강신리 54번지
수 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181번지
수정초등학교법주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상판리 210번지
수정초등학교삼가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삼가리 140번지
속 리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외속리면 장내리 243번지
관 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294번지
세 중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세중리 575-2번지
탄 부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덕동리 63번지
삼 승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상가리 333번지
판 동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내망리 536-1번지
송 죽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송죽리 192-4번지
수 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소계리 35번지
회 남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거교리 249번지
회 인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회북면 중앙리 96번지
내 북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동산리 119번지
산 외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구티리 52-2번지
죽 향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83번지
삼 양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5-1번지
군 남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서대리 279번지
동 이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72-1번지
동이초등학교우산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833-1번지
안 남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연주리 416번지
안 내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현리 171번지

명 칭	위 치
청 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234번지
청성초등학교능월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도장리 496번지
청 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 34번지
이 원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14-7번지
이원초등학교지탄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지탄리 754-1번지
대 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의평리 276-2번지
군 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동평리 551번지
증 약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641번지
증약초등학교대정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대정리 577번지
영 동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74-4번지
이 수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485번지
부 용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25번지
구 룡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141-1번지
황 간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 167-1번지
추 풍 령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리 375-1번지
매 곡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54번지
상 촌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임산리 357-1번지
양 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묘동리 331-2번지
미 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유점리 697-3번지
용 화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용화리 760번지
학 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 738-1번지
양 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 293-2번지
심 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528번지
초 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459번지
진천상산초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57-1번지
진천삼수초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33-1번지
진천삼수초등학교매산분교장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465-1번지

명 칭	위 치
성암초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679-2번지
이월초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452-4번지
학성초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중산리 597-7번지
금구초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579번지
옥동초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359-2번지
한천초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518-3번지
초평초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금곡리 593번지
구정초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산리 236-1번지
문백초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297번지
문상초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사양리 38-1번지
백곡초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구수리 144번지
만승초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79번지
상신초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330-18번지
괴산명덕초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335번지
동인초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485번지
감물초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오성리 81-1번지
장연초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349번지
장연초등학교광진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814-1번지
연풍초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 162번지
칠성초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311번지
칠성초등학교외사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152번지
문광초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294번지
청천초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77-1번지
청천초등학교신월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신월리 144번지
송면초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 116-2번지
문광초등학교덕평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덕평리 280번지
청안초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221번지

명 칭	위 치
백 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428번지
증 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증평리 1056번지
죽 리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죽리 308번지
삼 보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초중리 1105-2번지
도 안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도안면 화성리 87번지
보 광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576-1번지
보광초등학교화곡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이곡리 452번지
소 수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수리 554번지
목 도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290번지
추 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추산리 575-1번지
수 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209번지
남 신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757-6번지
남신초등학교덕생분교장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삼생리 94번지
평 곡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815번지
무 극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86번지
용 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0번지
오 선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 233-2번지
쌍 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쌍봉리 413번지
소 이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금고리 68번지
대 장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대장리 374번지
원 남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보룡리 371번지
하 당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433번지
맹 동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94번지
대 소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186-1번지
부 윤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부윤리 392번지
삼 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508-1번지
능 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능산리 203번지

명 칭	위 치
청 룡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청룡리 352-7번지
생 곡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생곡면 신양리 451-1번지
감 곡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489-2번지
오 갑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궁리 2-1번지
원 당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159번지
단 양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405번지
상 진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734번지
단 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108번지
단천초등학교가산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290번지
대 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91번지
대강초등학교장정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장정리 30번지
가 곡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467번지
가곡초등학교보발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보발리 711-1번지
가곡초등학교대곡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대대리 220-1번지
영 춘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 640번지
영춘초등학교의풍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 760번지
별 방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별방리 540번지
어 상 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1리 456-1번지
매 포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2리 271번지
가 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가평리 181-2번지
대 가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대가리 191번지

유 치 원 (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산 성 유 치 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438번지
주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48-1번지
교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84번지
용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103번지
상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62번지
석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10번지
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4번지
청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127번지
덕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울랑동 656번지
우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137번지
덕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61-10번지
용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186번지
청주덕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 61번지
금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213-1번지
북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428번지
운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430번지
새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00번지
원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328번지
한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560번지
남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219-1번지
서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977번지
복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709-4번지
모충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372번지
운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543-7번지
홍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865번지
창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351번지
사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2동 38-4번지

명 칭	위 치
강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121-1번지
내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내곡동 10-2번지
서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촌동 183번지
봉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1동 205번지
한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322번지
수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779번지
가경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443번지
경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13번지
원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63번지
경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4번지
진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31번지
남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09번지
증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10번지
개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637번지
충주교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1동 339-1번지
충주성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1동 293번지
충주예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2동 383-1번지
충주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용산동 2109번지
충주삼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11-1번지
단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단월동 513-19번지
목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동 577-1번지
달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용두동 410-1번지
달천초등학교매현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매현리 480번지
남한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동 1924번지
충주대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동 181번지
칠금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727번지
충주용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용산동 1671번지
세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147번지
수안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상모면 안보리 598번지
수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상모면 수회리 672번지

명 칭	위 치
대소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본리 569-15번지
주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72번지
용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용원리 245-3번지
동락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문락리 126번지
노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연하리 535-2번지
양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양성면 용대리 258-1번지
강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양성면 목미리 89-2번지
능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양성면 돈산리 11-5번지
가금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212-1번지
가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582-8번지
금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도촌리 400-1번지
오석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유송리 226-3번지
동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426-1번지
대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517번지
산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1282-1번지
엄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용산리 460번지
엄정초등학교목계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111번지
소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오량리 199번지
야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야동리 487번지
동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명동 68번지
의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동 186번지
남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영천동 760번지
남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남천동 260번지
화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화산동 606번지
홍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 396-1번지
두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흑석동 436번지
명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명지동 46번지
제천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625번지
용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405번지
신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동 212-7번지

명 칭	위 치
장락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장락동 626-9번지
봉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921번지
왕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757번지
금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294번지
청풍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44-3번지
수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609번지
제천덕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425번지
한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753번지
백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600번지
화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 84-1번지
송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1164-2번지
입석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입석리 609-2번지
낭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낭성면 이목리 108-1번지
미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298-3번지
미원초등학교금관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금관리 306-1번지
가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125번지
행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행정리 29-1번지
남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321-33번지
남일초등학교두산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106-1번지
신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신송리 411번지
남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대련리 255번지
갈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갈원리 143-1번지
문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 228번지
문의초등학교도원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두모리 243번지
현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달계리 548-1번지
옥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 622-4번지
부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432-3번지
강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348-1번지
강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60-1번지
상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상봉리 242-1번지

명 칭	위 치
만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163번지
옥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223번지
옥산초등학교소로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 313-1번지
오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장대리 238번지
오창초등학교유리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유리 394번지
북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내추리 10-2번지
석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내둔리 344번지
대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228번지
내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마산리 171번지
비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비상리 200번지
수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263-1번지
수성초등학교구성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구성리 265번지
삼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56-3번지
동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54-1번지
동광초등학교학림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중동리 9-1번지
종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강신리 54번지
수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181번지
속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보은군 외속리면 장내리 243번지
관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294번지
세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세중리 575-2번지
탄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덕동리 63번지
삼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상가리 333번지
판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내망리 536-1번지
송죽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송죽리 192-4번지
수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소계리 35번지
회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거교리 249번지
회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보은군 회북면 중앙리 96번지
내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동산리 119번지
산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구티리 52-2번지
죽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83번지

명 칭	위 치
삼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5-1번지
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서대리 279번지
동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72-1번지
동이초등학교우산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833-1번지
안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연주리 416번지
안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현리 171번지
청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234번지
청성초등학교능월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도장리 496번지
청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 34번지
이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강창리 14-7번지
이원초등학교지탄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지탄리 754-1번지
대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의평리 276-2번지
군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동평리 551번지
증약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641번지
증약초등학교대정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대정리 577번지
영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74-4번지
이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485번지
부용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25번지
구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141-1번지
황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 167-1번지
추풍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리 375-1번지
매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54번지
상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임산리 357-1번지
양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묘동리 331-2번지
미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유점리 697-3번지
용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용화리 760번지
학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 738-1번지
양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 293-2번지
심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528번지
초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459번지

명 칭	위 치
진천상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57-1번지
진천삼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33-1번지
진천삼수초등학교매산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465-1번지
성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679-2번지
이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452-4번지
학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중산리 597-7번지
금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579번지
옥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359-2번지
한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518-3번지
초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금곡리 593번지
구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산리 236-1번지
문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297번지
문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사양리 38-1번지
백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구수리 144번지
만승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79번지
상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330-18번지
괴산명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335번지
동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485번지
감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오성리 81-1번지
장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349번지
장연초등학교광진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814-1번지
연풍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 162번지
칠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311번지
칠성초등학교외사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152번지
문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294번지
청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77-1번지
청천초등학교신월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신월리 144번지
송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 116-2번지
문광초등학교덕평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덕평리 280번지
청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221번지

명 칭	위 치
백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428번지
증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증평리 1056번지
죽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죽리 308번지
삼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초중리 1105-2번지
도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도안면 화성리 87번지
보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576-1번지
소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수리 554번지
목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290번지
추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추산리 575-1번지
수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209번지
남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757-6번지
남신초등학교덕성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삼생리 94번지
평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815번지
무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86번지
용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0번지
오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 233-2번지
쌍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쌍봉리 413번지
소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금고리 68번지
대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대장리 374번지
원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보룡리 371번지
하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433번지
맹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94번지
대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186-1번지
부윤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부윤리 392번지
삼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508-1번지
능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능산리 203번지
청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청룡리 352-7번지
생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451-1번지
감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489-2번지
오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궁리 2-1번지

명 칭	위 치
원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159번지
단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405번지
상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734번지
단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108번지
단천초등학교가산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290번지
대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91번지
대강초등학교장정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장정리 30번지
가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467번지
가곡초등학교보발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보발리 711-1번지
가곡초등학교대곡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대대리 220-1번지
영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 640번지
별방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별방리 540번지
어상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1리 456-1번지
매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2리 271번지
가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가평리 181-2번지
대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대가리 191번지

신·구조문 대조표

현	안
<p>제1조(실치) 충청부도에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u>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u>를 설치한다.</p> <p>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u>별표 1 내지 별표 5와 같다.</u></p>	<p>제1조(실치) 충청부도에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u>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u>을 설치한다.</p> <p>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u>별표 1 내지 별표 6과 같다.</u></p> <p>부 칙</p>
	<p>①(시행언) 이 조례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u>용성초등학교, 영정초등학교목계분교장 및 영정초등학교목계분교장병설유치원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u></p> <p>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유치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p>

고등학교 신·구조문 대조표

현		개	
명	정	명	정
(신)	(생)	(현)	(위)
(신)	(생)	(현)	(위)
상당고등학교	(신)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33번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361번지
(생)	(생)	(현)	(위)
(생)	(생)	(현)	(위)
충주외국어고등학교	(신)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444번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457번지
(신)	(생)	(현)	(위)
(신)	(생)	(현)	(위)
(생)	(생)	(현)	(위)

중학교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지	명	칭	위	치	명	치
북내중학교 (신)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북대1동 2608번지 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북대1동 2608번지 실)		원평중학교 (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원평동 1362번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원평동 1362번지			
(생)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교현2동 1088번지 실)		서경중학교 (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경동 1583번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경동 1583번지			
충주중앙중학교 (신)	충청북도 청주시 교현2동 1088번지 실)	충청북도 청주시 교현2동 1088번지 실)		칠금중학교 (현)	충청북도 청주시 칠금동 1084번지	충청북도 청주시 칠금동 1084번지			
(생)		충청북도 세천시 하소동 49-2번지 실)		탄금중학교 (현)	충청북도 청주시 탄금동 822번지	충청북도 청주시 탄금동 822번지			
의림여자중학교 (신)	충청북도 세천시 하소동 49-2번지 실)	충청북도 세천시 하소동 49-2번지 실)		내토중학교 (현)	충청북도 세천시 장락동 687-1번지	충청북도 세천시 장락동 687-1번지			
(생)									

초등학교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명	성	위	치	명	성	위	치	명	치
주	(생)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48-1번지	량)	(현)	행	과	감	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안동 2840번지
(생)	(신)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48-1번지	량)	(현)	행	과	감	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안동 2840번지
(생)	(신)	충청북도 청주시 영정면 용산리 160번지	량)	(현)	행	과	감	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안동 2840번지
(생)	(신)	충청북도 청주시 영정면 목계리 111번지	량)	(현)	행	과	감	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안동 2840번지
(생)	(신)	충청북도 청주시 신백동 212-7번지	량)	(현)	행	과	감	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안동 2840번지
(생)	(신)	충청북도 청주시 신백동 212-7번지	량)	(현)	행	과	감	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안동 2840번지
(생)	(신)	충청북도 청주시 신백동 212-7번지	량)	(현)	행	과	감	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안동 2840번지

유치원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명	칭
	(신 설)			산 성 유 치 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438번지		
	(신 설)			강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장락동	626-9번지		
(기설치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조례에 포함)				주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48-1번지		
				교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84번지		
				용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103번지		
				상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62번지		
				석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10번지		
				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4번지		
				청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127번지		
				덕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율랑동	656번지		
				우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137번지		
				덕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61-10번지		
				용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186번지		
				청주덕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	61번지		
				금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213-1번지		
				북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428번지		
				운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430번지		
				새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00번지		
				원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328번지		
				한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560번지		
				남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219-1번지		
				서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북대동	977번지		
				북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북대동	709-4번지		
				모충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372번지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기설치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조례에 포함)		윤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윤천동 543-7번지
		홍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윤천동 865번지
		참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351번지
		사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2동 38-4번지
		강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121-1번지
		내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내곡동 10-2번지
		서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촌동 183번지
		봉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1동 205번지
		한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322번지
		수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779번지
		가경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443번지
		경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13번지
		원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63번지
		경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4번지
		진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31번지
		남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09번지
		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10번지
		개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637번지
		충주교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1동 339-1번지
		충주상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1동 293번지
		충주예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2동 383-1번지
		충주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용산동 2109번지
		충주삼익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11-1번지
		단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단월동 513-19번지
목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동 577-1번지		
달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용두동 410-1번지		

현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기설치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조려에 포함)		담양초등학교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매현리 480번지
		남한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동 1924번지
		충주대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동 181번지
		칠금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727번지
		충주용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용산동 1671번지
		세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147번지
		수안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상모면 안보리 598번지
		수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상모면 수희리 672번지
		대소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본리 569-15번지
		주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72번지
		용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용원리 245-3번지
		동락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문락리 126번지
		노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연하리 535-2번지
		양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양성면 용대리 258-1번지
		강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양성면 목미리 89-2번지
		능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양성면 돈산리 11-5번지
		가금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탐평리 212-1번지
		가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582-8번지
		금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도촌리 400-1번지
		오석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유송리 226-3번지
	동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426-1번지	
	대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517번지	
	산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1282-1번지	
	엄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용산리 460번지	
	엄정초등학교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111번지	
	소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오량리 199번지	

현행		개정안	
명칭	위치	명칭	위치
(기설치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조례에 포함)		야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야동리 487번지
		동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명동 68번지
		의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동 186번지
		남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영천동 760번지
		남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남천동 260번지
		화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화산동 606번지
		홍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 396-1번지
		두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흑석동 436번지
		명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명지동 46번지
		제천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625번지
		용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405번지
		신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동 212-7번지
		봉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921번지
		왕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757번지
		금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294번지
		청풍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44-3번지
		수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609번지
		제천덕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425번지
		한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753번지
		백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600번지
화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 84-1번지		
송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1164-2번지		
입석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입석리 609-2번지		
남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남성면 이목리 108-1번지		
미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298-3번지		
미원초등학교금원분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금관리 306-1번지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명	칭
(기설치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조례에 포함)			가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125번지		
				행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행정리	29-1번지		
				남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321-33번지		
				남일초등학교두산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106-1번지		
				신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신송리	411번지		
				남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대련리	255번지		
				갈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갈원리	143-1번지		
				문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	228번지		
				문의초등학교도원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두모리	243번지		
				현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달계리	548-1번지		
				옥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	622-4번지		
				부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432-3번지		
				강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348-1번지		
				강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강의면 오송리	60-1번지		
				상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강의면 상봉리	242-1번지		
				만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강의면 만수리	163번지		
				옥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223번지		
				옥산초등학교소로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	313-1번지		
				오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장대리	238번지		
				오창초등학교유리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유리	394번지		
				북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내추리	10-2번지		
				석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내둔리	344번지		
				대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228번지		
				내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마산리	171번지		
				비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비상리	200번지		
				수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263-1번지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명	칭
(기설치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조례에 포함)			수성초등학교수성분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구성리 265번지	
				삼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56-3번지	
				동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54-1번지	
				동광초등학교하림분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중동리 9-1번지	
				종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강신리 54번지	
				수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181번지	
				속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보은군 외속리면 장내리 243번지	
				관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294번지	
				세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세중리 575-2번지	
				탄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덕동리 63번지	
				삼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상가리 333번지	
				판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내망리 536-1번지	
				송죽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송죽리 192-4번지	
				수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소계리 35번지	
				회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거교리 249번지	
				회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보은군 회북면 중앙리 96번지	
				내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동산리 119번지	
				산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구티리 52-2번지	
				죽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83번지	
				삼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5-1번지	
				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서대리 279번지	
				동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72-1번지	
				동이초등학교우산분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833-1번지	
				안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연주리 416번지	
				안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현리 171번지	
				청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234번지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명	칭
(기설치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조려에 포함			청성초등학교	이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도장리 496번지		
				청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 34번지		
				이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강창리 14-7번지		
				이원초등학교	이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지탄리 754-1번지		
				대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의평리 276-2번지		
				군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동평리 551번지		
				중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중약리 641번지		
				중약초등학교	이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대정리 577번지		
				영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74-4번지		
				이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485번지		
				부용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25번지		
				구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141-1번지		
				황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 167-1번지		
				추풍령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리 375-1번지		
				매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54번지		
				상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임산리 357-1번지		
				양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묘동리 331-2번지		
				미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유점리 697-3번지		
				용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용화리 760번지		
				학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 738-1번지		
				양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 293-2번지		
				심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528번지		
				초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459번지		
				진천상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57-1번지		
				진천삼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33-1번지		
				진천삼수초등학교	이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신탄리 465-1번지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기설치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조계에 포함)		성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679-2번지
		이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452-4번지
		학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중산리 597-7번지
		금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579번지
		옥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359-2번지
		한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518-3번지
		초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금곡리 593번지
		구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산리 236-1번지
		문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297번지
		문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사양리 38-1번지
		백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구수리 144번지
		만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위면 광혜원리 79번지
		상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330-18번지
		괴산명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335번지
		동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485번지
		감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오성리 81-1번지
		장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349번지
		장연초등학교광진분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814-1번지
		연풍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 162번지
		칠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311번지
찰성초등학교사북분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152번지		
문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294번지		
청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77-1번지		
청천초등학교신월분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신월리 144번지		
송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 116-2번지		
문광초등학교평분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덕평리 280번지		

현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기설치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조례에 포함)		청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221번지
		백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428번지
		증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증평리 1056번지
		죽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죽리 308번지
		삼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초중리 1105-2번지
		도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도안면 화성리 87번지
		보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576-1번지
		소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수리 554번지
		목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290번지
		추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추산리 575-1번지
		수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209번지
		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757-6번지
		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삼생리 94번지
		평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815번지
		무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86번지
		용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0번지
		오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 233-2번지
		쌍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쌍봉리 413번지
		소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금고리 68번지
		대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대장리 374번지
원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보룡리 371번지		
하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433번지		
맹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94번지		
대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186-1번지		
부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부운리 392번지		
삼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508-1번지		

현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기설치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조례에 포함)	능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능산리	203번지		
		침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침룡리	352-7번지		
		생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451-1번지		
		감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489-2번지		
		오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궁리	2-1번지		
		원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159번지		
		단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405번지		
		상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734번지		
		단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108번지		
		단천초등학교가분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290번지		
		대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91번지		
		대강초등학교정봉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장정리	30번지		
		가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467번지		
		가곡초등학교보발분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보발리	711-1번지		
		가곡초등학교대곡분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대대리	220-1번지		
		영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	640번지		
		별방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별방리	540번지		
		어상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1리	456-1번지		
		매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2리	271번지		
		가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가평리	181-2번지		
		대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대가리	191번지		

관계법령 발췌서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등의 설립)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교육기관의 설치) ① 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의안번호	제 147 - 5 호
의결 년 월 일	2002년 11월 일 (제 회)

청풍 초·중통합운영학교 위치 변경(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 출 년 월 일	2002년 11월 16일

청풍초·중통합운영학교 위치 변경(안)

의안 번호	147-5
----------	-------

제출년월일 : 2002. 11. 16.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련부서 : 기획관리과

I. 제안사유

- 제 146회 교육위원회(2002. 10. 30)에서 가결된 2004학년도 초·중통합운영학교 설치계획의 위치변경.
- 당초 부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천중청풍분교장에 설치 계획이던 통합운영학교위치를 건물배치, 채광 등 교육환경이 좋은 청풍초등학교로 변경.

II. 통합운영학교 설치위치 변경

변경위치

- 통합운영학교 설치위치를 『제천중청풍분교장』에서 『청풍초등학교』로 변경

변경사유

- 당초 청풍초등학교는 부지협소로 통합운영학교 설치위치를 증축교실배치여건이 좋은 제천중 청풍분교장으로 결정하였으나
- 제천중 청풍분교장은 건물방향이 북향으로 채광여건, 동일건물이라도 동고서저(東高西低)등 교육환경이 열악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변 경관이 수려한 청풍초등학교에 통합운영학교를 설치하고자 함

III. 위치변경(안)

구분	당초	변경	비고
통합운영 위치	제천중청풍분교장	청풍초등학교	
주소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산6번지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44-3	

(별첨 7)

의안번호	제147-6 호
의 결 연 월 일	2002년 월 일 (제 회)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 출 연 월 일	2002년 11 월 16 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147-6

제출년월일 : 2002. 11. 16.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사유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취득

구분	기관명	사업명	수량	추정금액(천원)
건물	증안초외 9교	교실외 9건	8,775㎡	6,432,949

3. 제안근거

가. 지방재정법 제77조

나.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붙임 : 건물 취득 배치도 6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계획서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특	취	계								
		토지								
		건물			10	8,775	6,432,949	10	8,775	6,432,949
		기타								
	1. 매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토지								
		건물			10	8,775	6,432,949	10	8,775	6,432,949
기타										
처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	토지								
		건물								
		기타								

취득대상 재산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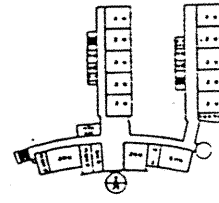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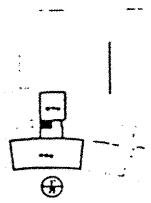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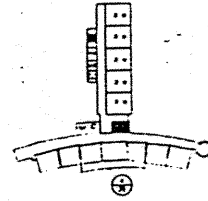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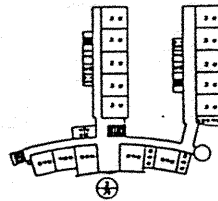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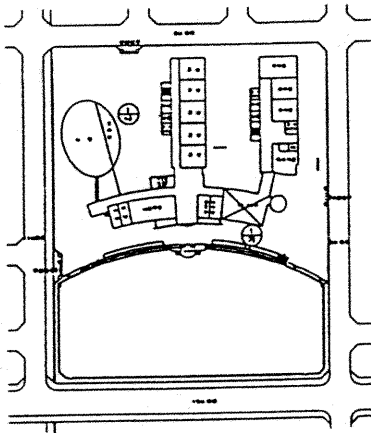
(단위:㎡,천원)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 득 소 유 자	비 고
기관명	구분	소재지	수량					
증안초	건물	북대동 2610	780	645,391	하반기	수용시설 확충	교육감	1쪽
사천초	건물	사천동 26-1	846	544,000	하반기	다목적실 확충	교육감	신설교
울봉초	건물	주중동 173	820	527,200	하반기	다목적실 확충	교육감	신설교
금릉초	건물	금릉동 701	1,000	643,200	하반기	다목적실 확충	교육감	신설교
내토초	건물	신백동 132-26	992	638,400	하반기	다목적실 확충	교육감	신설교
이월초	건물	송림리 667	714	591,000	하반기	다목적실 확충	교육감	2쪽
생극초	건물	신양리 451-1	736	554,879	하반기	평생교육시설확충	교육감	3쪽
청운중	건물	영운동 73-48	736	554,879	하반기	평생교육시설확충	교육감	4쪽
충주여고	건물	용산동 2060	1,107	870,000	하반기	평생교육시설확충	교육감	5쪽
옥천상고	건물	문정리 247	1,044	864,000	하반기	다목적실 확충	교육감	6쪽
계			8,775	6,432,949				

※ 신설교 4교는 건물배치도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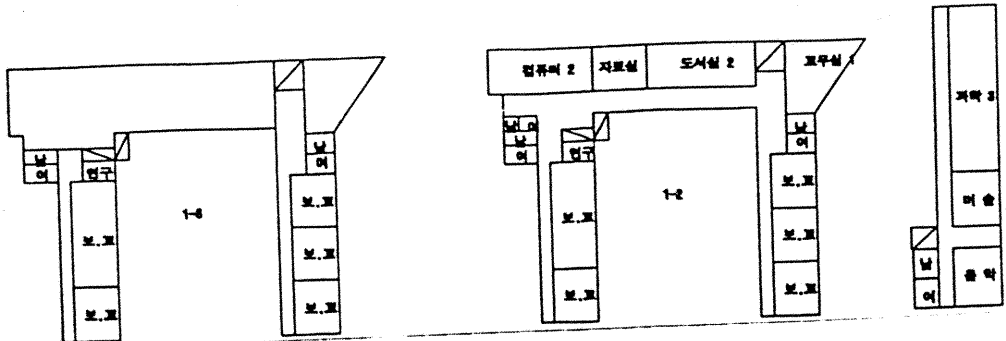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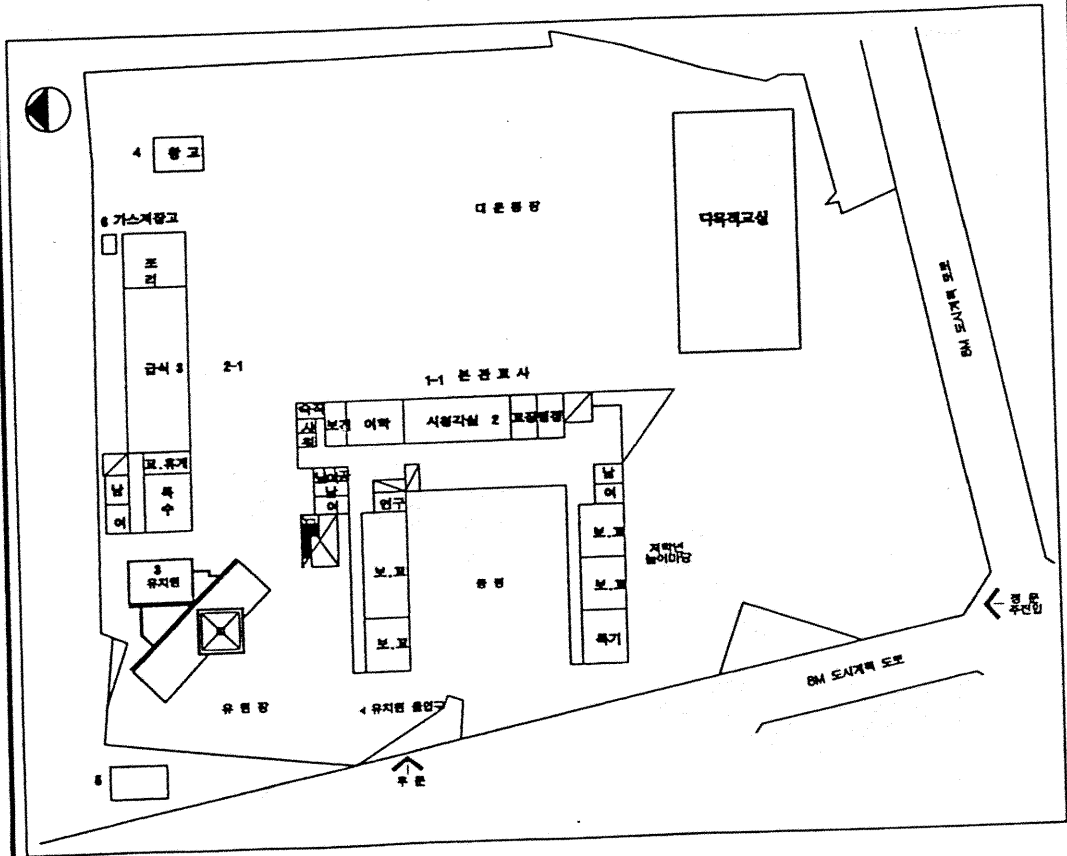
(1) 청주 증안초 건물 취득 배치도

소재지번	용도	구조	수량 (㎡)	추정가액 (천원)	사유
복대동 2610	교실	철콘슬	630	493,191	수용시설 확충
	현관		90	62,400	
	학생화장실		60	89,800	
계			780	645,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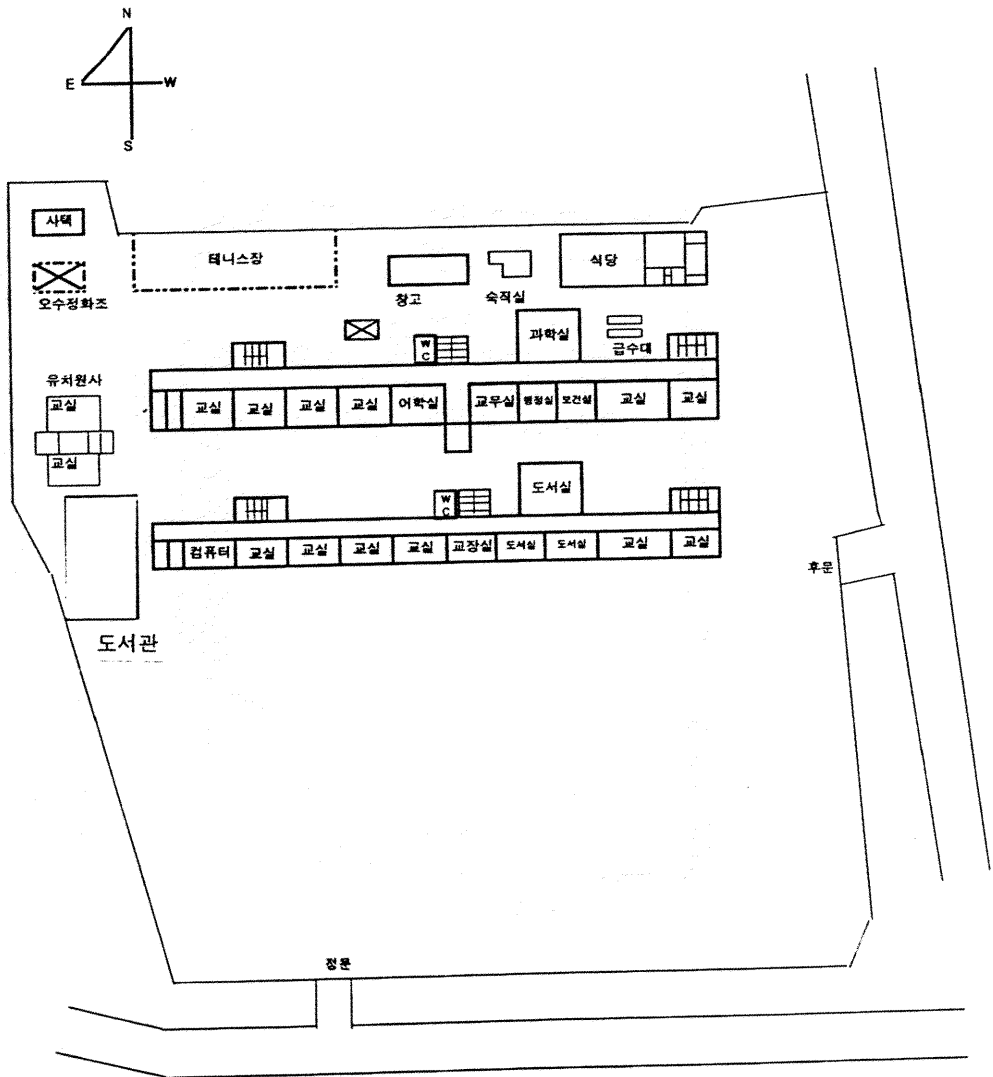
(2) 진천 이월초 건물 취득 배치도

소재지번	용도	구조	수량 (㎡)	추정가액 (천원)	사유
이월면 송림리 667	다목적교실	철콘슬	714	591,000	다목적실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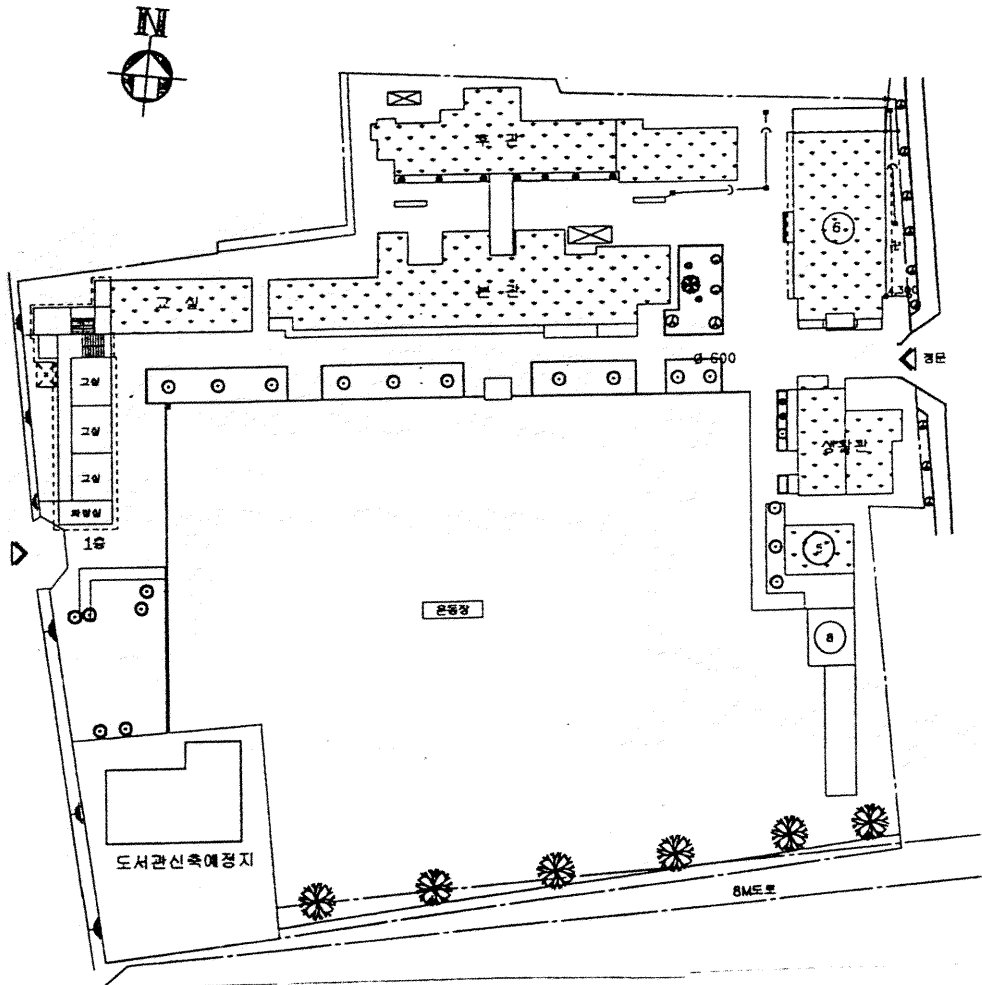
(3) 음성 생극초 건물 취득 배치도

소재지번	용도	구조	수량 (㎡)	추정가액 (천원)	사유
생극면 신양리 451-1	도서관	철콘슬	736	554,879	평생교육시설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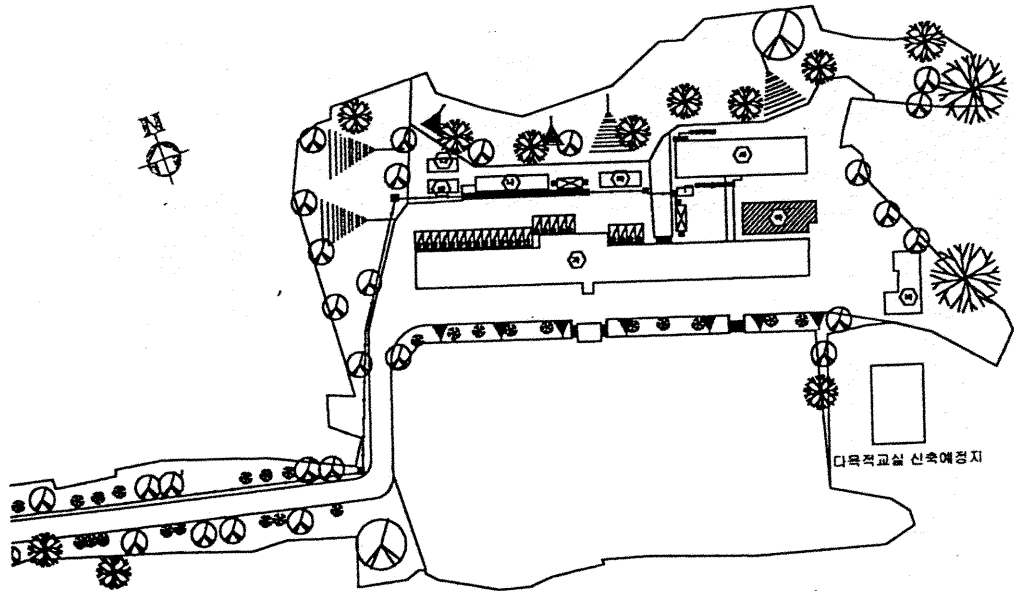
(5) 충주여고 건물 취득 배치도

소재지번	용도	구조	수량 (㎡)	추정가액 (천원)	사유
용산동 2060	도서관	철콘슬	1,107	870,000	평생교육시설 확충



(6) 옥천상고 건물 취득 배치도

소재지번	용도	구조	수량 (㎡)	추정가액 (천원)	사유
옥천읍 문정리 247	다목적교실	철콘슬	1,044	864,000	다목적실 확충



(별첨 8)

의안번호	제 147-7 호
의결 연월일	2002년 11월 일 (제 회)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2년 11월 16 일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 번호	141-7
----------	-------

제출년월일 : 2002. 11. 16.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 련 부 서 : 기 획 관 리 과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골자

-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조 337억 6,351만 2천원에서 세입·세출 예산 각각 244억 5,842만원이 증액된 1조 582억 2,193만 2천원으로 편성한 바,
- 세입예산 중 국가부담수입 225억 3,671만 7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19억 2,170만 3천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 학교교육 100억 2,216만 7천원, 교육행정 10억 5,808만 5천원, 기타경비 150억 1,208만원을 계상하였고, 급여·복지에서 16억 3,391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음.

예산(안) : 별책

사항별 설명서 : 별책

(별첨 9)

(제147회 임시회)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2. 11. 30.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년 11월 16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2년 11월 26일

다. 상정일자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2년 11월 26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2년 11월 28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가. 개정이유

- 휴직 후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일반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산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 하는 방식에서 당해 연도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 토록함(안 제19조제2항).
-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안 제21조제6호)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조례안은 2002. 4. 18.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일반휴직자의 복직 시 연가일수 산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그 개정내용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별첨 10)

(제147회 임시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2. 11. 30.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년 11월 16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2년 11월 26일

다. 상정일자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2년 11월 26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2년 11월 28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가. 개정이유

-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민원인이 거주하는 인접 지역의 전국 초·중등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제증명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므로 시·도교육청간 상이한 제증명수수료를 통일시켜 수수료 격차로 발생될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제증명수수료는 현행과 같이 1건당 300원으로 하고 외국문의 경우 600원으로 징수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조례안은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전국 초·중등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에서의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를 통일시켜 수수료 격차로 인한 민원의 발생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그 개정내용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별첨 11)

(제147회 임시회)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2. 11. 30.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년 11월 16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2년 11월 26일

다. 상정일자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2년 11월 26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2년 11월 28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가. 개정사유

- 2003학년도에 유치원 2원, 초등학교 2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3교 등 12개교를 신설 개교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에 따라 1개교의 본교가 분교장으로 개편되어 도립학교 설치조례를 변경 함.
- 기 설치되어 운영 중인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도립학교 설치조례에 포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설치대상 학교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별표 6을 신설함(안 제1조, 제2조).
- 2003. 3월 설립되는 흥덕고등학교, 서원고등학교, 주성고등학교 및 원평중학교, 서경중학교, 칠금중학교, 탄금중학교, 내토중학교를 삽입 함(별표1, 별표3).
- 2003. 3월 설립되는 장락초등학교와 2003. 9월 설립되는 용성초등학교를 삽입하고 2003. 9월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목계초등학교를 엄정초등학교목계분교장으로 변경함(별표4).
- 2003. 3월 설립되는 산성유치원, 장락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및 기 설치되어 운영중인 초등학교 병설유치원(251개 유치원)을 삽입 함(별표6).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 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개정조례안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학교를 신설하고, 농촌 교육발전과 교육과정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기 설치되어 운영중인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독립학교 설치조례에 포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이 적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별첨 12)

(제147회 임시회)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2. 11. 30.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년 11월 16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2년 11월 26일

다. 상정일자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2년 11월 26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2년 11월 28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교육국장 반장남)

가. 개정사유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폐지된 규제를 운용하고, 민원 처리 시 법령에 근거 없는 서류를 과다 징구 하는 등 행정편의에 의해 집행되는 규제를 시정보완 조치하라는 권고를 수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학원의 시설은 동일건물의 동일층을 원칙으로 하고, 직상층 또는 직하층으로 이어진 2개층 이상에 시설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2조제5항).
-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을 1.5제곱미터 당 1명 이하로 하되, 토목·건축·농림(동물), 미용·무용·전통무용, 음악 교습과정은 2제곱미터 당 1명 이하로, 음악중 피아노 교습과정은 4제곱미터 당 1명 이하로 함(안 제3조제1항).
-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05:00부터 23:00까지(독서실 24:00)로 한 규정 삭제(안 제4조제1항)
- 생활지도사를 채용 및 해임 한 때에는 관할교육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7조)

- 「별표 3」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인원 삭제.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폐지된 규제를 운용하고, 민원 처리 시 법령에 근거 없는 서류를 과다 징구 하는 등 행정편의에 의해 집행되는 규제를 시정보완 조치하라는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05:00부터 23:00까지(독서실 24:00)로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 향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유보함.

6. 심사결과 : 보류.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별첨 13)

(제147회 임시회)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02. 11. 30.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년 11월 16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회부일자 : 2002년 11월 26일
- 다. 상정일자
 - 제1차 소위원회(2002년 11월 26일)
 - 제2차 소위원회(2002년 11월 28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033,763,512천원에서 세입·세출 예산 각각 24,458,420천원이 증액된 1,058,221,932천원으로 편성한 바,
- 세입예산 중 국가부담수입 22,536,717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1,921,703천원을 증액하여
- 세출예산에 학교교육 10,022,167천원, 교육행정 1,058,085천원, 기타경비 15,012,080천원을 계상하였고, 급여·복지 1,633,91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음.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되는 세입재원의 교부목적 이행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예산편성 개요

예산규모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1,033,763,512천원보다 24,458,420천원이 증가한 1,058,221,932천원으로 편성하였음.

(단위 :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 감		비 고
		금 액	비 율	
1,058,221,932	1,033,763,512	24,458,420	2.4%증	

세입예산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22,536,717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1,921,703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관별 자원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장 관 별		금 액	구성비(%)
국가부담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3,306,274	95.2
	지방교육양여금	△1,435,883	△5.8
	국고지원금	666,326	2.7
	소 계	22,536,717	92.1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재산수입	1,577,108	6.5
	사용료및수수료	30,874	0.1
	잡수입	313,721	1.3
	소 계	1,921,703	7.9
합	계	24,458,420	100.0

□ 세출예산

세출예산은

학교교육 10,022,167천원, 급여·복지 △1,633,912천원, 교육행정 1,058,085천원,

기타경비 15,012,080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관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장	관	별	금	액	구	성비(%)
학교교육		유치원		709		0.0
		초등학교		6,926,521		28.3
		중학교		△246,815		△1.0
		고등학교		3,188,882		13.0
		특수학교		151,925		0.6
		기타학교		945		0.0
		소계		10,022,167		40.9
급여·복지		복지후생		△1,633,912		△6.6
교육행정		교육청		709,469		2.9
		지역교육청		168,055		0.7
		교육지원기관		180,561		0.7
		소계		1,058,085		4.3
기타경비		지방채상환		2,751,217		11.3
		예비비		12,260,863		50.1
		소계		15,012,080		61.4
합		계		24,458,420		100.0

□ 주요사업별예산편성 내역

○ 시설비

· 학교신설

· 수용시설 확충

· 교육환경 개선

· 기타시설

10,005,397천원

2,195,996천원

1,065,604천원

878,400천원

5,865,397천원

○ 교육정보화 사업	960,422천원
· ICT모델학교 인프라 구축	305,400천원
· 청각장애학생 보완도구 구입비 지원	39,652천원
· 시각장애학생 점자정보 단말기 구입비 지원	445,500천원
· 교육정보화 지원센터 운영	161,920천원
·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7,950천원
○ 교육활동지원	△78,470천원
○ 학업성취도 평가 사업비 조정	△110,570천원
○ 과학실업교육 지원	1,284,968천원
· 직업교육 확충	1,233,968천원
· 과학교육 진흥	50,000천원
· 학예행사 지원	1,000천원
○ 학비 지원	36,189천원
· 농업재해 피해가구 자녀 학비지원	1,306천원
· 호우 피해가구 자녀 학비지원	3,282천원
· 태풍 「루사」 피해가구 자녀 학비 지원	31,601천원
○ 기 타	△43,376천원
· 대학수학능력시험	306,919천원
· 중등교원 임용시험	74,200천원
· 대여장학금	△1,633,912천원
· 인적자원개발 시범지역 운영	200,000천원
· 재정결함 보조 조정	△1,852,800천원
· 교원안전망 구축	111,000천원
· 지방채 원금 상환	2,751,217천원

다. 종합의견

금번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교부금 및 지원금, 자체수입 등의 재원으로 학생수용시설 확충,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실업계고 직업교육 확충, 지방채 원금상환 등을 중점으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적정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됨. 다만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요예산과 필요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하는 등 자체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아울러 다목적교실, 도서관 등의 시설배정 시 가능한 한 지역간, 학교급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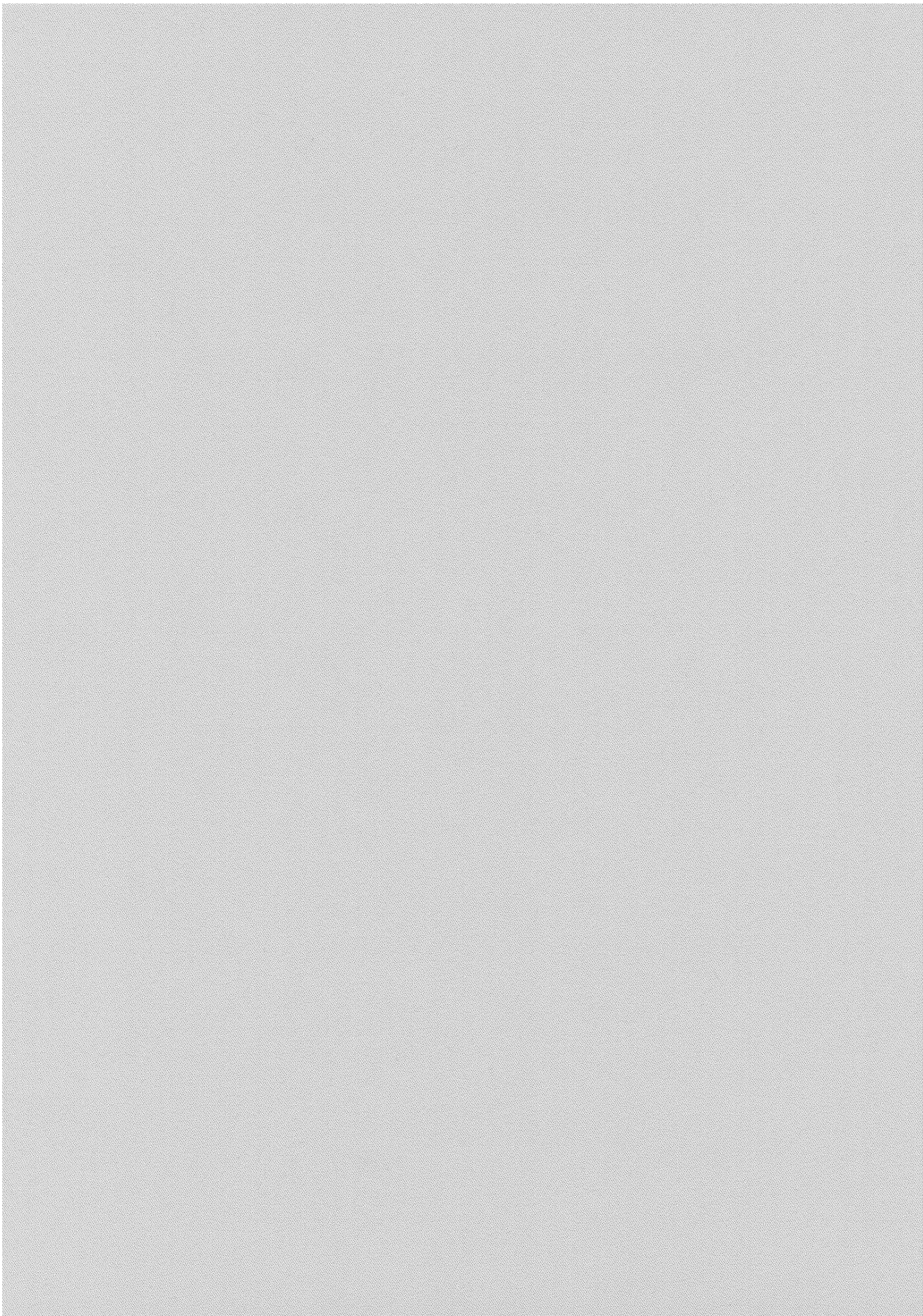
8.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第147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 I. 제14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135
- II. 제14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141
- III. 부 록
 -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153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2년 11월 26일 (화요일) 16시 36분

議事日程 (제147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6시 36분 개회)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 고규강 위원

차례에 의해서 김남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현

김남훈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남훈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남훈

우선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출의견

(16시 38분)

● 위원장 김남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견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규강 위원

성영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 의사국장 이상기

아니, 지금 안계시고 30일날도 아마 빠지실 것 같아요.

● 고규강 위원

내일은 오신다고 그랬는데.....

● 의사국장 이상기

내일은 오시는데 30일날 빠지고 그래서 순서를 좀 바꾸셔서 하시면.....

● 이기수 위원

아니 아니, 예산안은 우리 송위원님이 하시고 간사는 우리 셋중에서 하나가 간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송대현 위원

이기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남훈

그럼, 이기수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기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하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기수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이

소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16시 40분)

● 위원장 김남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소위원회의 활동은 오늘과 11월 28일 2일간으로 하여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위원장님, 근데 제가 좀 관심있어서 유심히 봤는데요, 부의한 안건의 순서하고 조례심사소위원회에 논의하는 순서가 변동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남훈

네. 지금 진옥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에 대해서 담당관계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본회의 부의 안건이 10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중에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4가지인데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요.

● 의사국장 이상기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제안할 때는 학무국이 선임국이기 때문에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관리국이 후 순위가 되어서 이렇게 해서 순서가 됐고 여기에서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학원설립하고 순서는 그대로 우리가 한건데 다른 뜻은 전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순서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요?

● 의사국장 이상기

우리가 본회의에서 하는 순서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 진옥경 위원

예. 그렇습니다.

● 의사국장 이상기

글쎄, 아까 그 순서대로 우리가 했는데요?

● 진옥경 위원

여기 조례심사소위원회의 1,2,3,4는 순

[제147회-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보는 겁니다.

● 의사국장 이상기

아, 이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거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회의에서는 소관별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사일정 협의할 때, 그래서 관리국 소관의 사항은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요걸 먼저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학무국 소관 사항은 조금 아까도 우리가 의사일정을 협의하실 때 좀 심도있게 한번 협의해 보자 그래서 요것은 맨 끝으로 돌린 것입니다.

● 진옥경 위원

시간할애를 좀 위해서.....

● 의사국장 이상기

예, 예.

● 진옥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훈

답변이 되셨습니까?

● 진옥경 위원

네.

● 위원장 김남훈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8일 오후 2시 제2차 소위원회에서 조례안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0 출석위원 : 5명

위원장 김남훈, 간사 이기수,
위 원 고규강, 송대현,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2명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 부 록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2년 11월 28일 (목요일) 14시 00분

議事日程 (제147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고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고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남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조례안 심사는 개정 조문내용이 많지 않으므로 개개조문에 대한 축

조심사는 생략하고, 전체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
례중개정조례안

(14시 01분)

● 위원장 김남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작성의 주관 과장인 총무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진성

총무과장 김진성입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휴직후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서 일반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 계산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 연도의 근무일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통계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료보험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작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휴직자의 휴직기간을 그 휴직한 사람이 연간할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그냥 바로 공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60일 휴직을 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금년도에 1년동안 20일간 연가를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60일을 빼면 오히려 40일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연가를 하루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60일을 월할로 계산해서 두 달이 되기 때문에 21를 12로 나누어서 그것이 두 달분만 연가를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휴직일수를 월할로 먼저 계산하고 그 달에 그 달만큼 할 수 있는 연가일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같은 방법으로 할 것 같으면 21일을 휴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약 한 3,4일정도 공제한 나머지는 연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휴직일수를 그냥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휴직일수를 월할로 해서 그 달수만큼 할 수 있는 연가를 제외하는 것이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충청북도교육비특별 회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거주하는 인접 지역의 전국 초·중등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제증명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므로 시·도교육청간 상이한 제증명수료를 통일시켜 수수료 격차로 발생될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과 같이 1건당 300원으로 그냥 확정을 하는데 다만 영문으로 된 것만 600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서 어느 곳에서 민원을 제기하든 그 수수료가 동일하게 되도록 이렇게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간사 이기수

연가문제 계산방법 내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타 시·도도 그런 방법으로 하나요? 공식이 말이

요, 물론 취지는 괜찮은 얘기인데 나누고 빼고 공식이 그거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합리성 있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고안을 해갖고서 그렇게 한 겁니까? 또는 타 시·도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 일괄적으로 그런 취지는 이해하는데 그러면 그 날짜 변화가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닌단 얘기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요것은 저희들 지방공무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공무원이 복무규정이 먼저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행정자치부에서 일반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의 지방공무원들도 전부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산출방식은 12분의 월로 계산하는 걸로 이렇게 같습니다, 각 지역적으로.

● 간사 이기수

거기서 그런 계산방식을, 다 똑같은지?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같습니다.

● 위원장 김남훈

다른 질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 하고 말함)

의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10분)

● 위원장 김남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작성의 주관 과장인 기획관리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3년도에 신설되는 유치원 2개교 산성유치원과 그리고 제천의 장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3개교 12개교를 여기에 삽입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초등학교에 병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도립학교설치조례에 지금 같이 삽입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요번에 도립학교설치조례에 같이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훈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교육위원 진옥경입니다.

이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해서 생겨나는 어떤 파급효과랄까 여러 가지 적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텐데, 병설유치원 251개의 병설유치원이 전부 여기에 들어감에 따라서 어떠한 행정상의 그런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인지, 앞으로의 어떤 예산이나 아니면 인사발령에서 이제까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수의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이 규정에 의해서

개정이 되거나 이런 큰 변화는 없는지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진옥경 위원님께서 조례에 병설유치원이 삽입됨으로써 어떤 혜택이 변화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참 저희들이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에 당초에 병설유치원이 생길 때부터 그 해에 조례를 개정하는 당시에 병설유치원도 같이 삽입을 해서 조례로 유지를 해 왔어야 맞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를 설립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는 지금 교육위원님들의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과 학교가 맞물려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학교를 설립할 때에 설립계획을 심의를 맞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과 조례를 승인을 해야 완벽한 도민의 학교가 되는데, 병설유치원이 당초에 시작을 할 때에 국가가 예산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단독유치원으로 탄생이 되지 아니하고 기존 초등학교에 병설로 되다보니까 각 시·도마다 그것을 조례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교육부 쪽에서의 유권해

석이라든가 각 시·도의 행정관례나 조례 관례상 넣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금 현재 엄연히 병설초등학교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초등학교에만 그냥 병설로 둘 것이 아니라 독립된 기관으로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법리상 맞다, 그래서 이번에 251개의 병설유치원을 한꺼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사항은 현재는 병설유치원이기 때문에 병설유치원 원장들을 임용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서 즉 교육국장님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하기는 일단은 현행대로 기관장은 병설이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운영을 하고 다만 나머지 부수적인 것도 당분간은 현행과 같이 운영을 하자, 다만 학교는 분명히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렇다고 그래서 병설유치원 다니는 학생들이 나중에 7년 후에 초등학교 졸업장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분리를 해서 학교로 존재로써 우리가 조례에 집어 넣자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체제가 얼마 후에는 그러면 유치원원장이 따로 발령이 나겠다는 그런 변화를 지금 예측하고 계시는 거네요.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지금 현재 병설유치원을 도립학교설치 조례에 포함시킨다고 해서 그 병설유치원을 별도로 발령한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교장이 겸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게 돈이 없고 그래서 독립유치원으로 해줘야 만이 별도 원장 발령이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지금 여건상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병설유치원이 잘되고 있는데도 있지만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들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도 이루어져야 되고 할텐데, 지금 현행으로 이렇게 묶어두고서 어떤 단계적으로 원장발령이나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있으신게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여쭙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산성유치원에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반대측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 교육청이 뭐랄까 원장발령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병설유치원의 어떤 존재나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고, 또 거기에 원장발령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되어 있을 때 교육공무원들이 다시 원장으로 나간다가 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우려하면서, 지금

단설유치원을 짓는다 또 이것이 단초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나갈거라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사실은 저는 병설유치원이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는데도 이제 까지 안되어 있다가 이런 조례로 커다란 변화가 생겨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여쭙보게 된 것입니다.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병설유치원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진작에 도립학교설치조례에 포함시켰어야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병설이고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하다 보니까 그것을 못했는데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단설유치원을 갖다가 그걸 설립을 하고서 조례에 넣다보니까 병설유치원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타 시·도를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타 시·도도 똑같이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때 이런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서 지금 9개 시·도가 도립학교설치조례에 포함시켰고 나머지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진옥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훈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
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
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 하고 말함)
의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
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
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17분)

● **위원장 김남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작성의 주관 과장인 평생교
육체육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이기석**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에 의거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폐지된 규제를 운
영하고 민원처리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서류를 과다징구하는 등 행정편의에 의해
집행되는 규제를 시정·보완 조치하라는
권고를 수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
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학원의
시설은 동일건물의 동일층을 원칙으로 하
고 직상층 또는 직하층 이어진 2개층 이
상에 시설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
며 둘째, 실험실습, 실기 등을 요하는 학
원의 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인원을
1.5㎡당 1명이하로 하되 토목, 건축, 농
림, 미용, 무용, 전통무용, 음악 교습과
정은 2㎡당 1명이하로 음악중 피아노 교습
과정은 4㎡당 1명이하로 하였습니다.

셋째,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05시부터 23시까지, 독서실은
24시까지로 한 규정을 삭제하고 넷째, 생
활지도사를 채용 및 해임할 때에는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
며 다섯째, 별표3의 실험실습 또는 실기
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인원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입법에고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주시부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05시부터 23시까지, 독서실은 24시까지로 하는 규정 삭제를 반대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이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삭제지시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안에 미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남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규강 위원

고규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평생교육체육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교육차원에서 11시까지 다른건 말씀안드리고 시간을 공교육차원에서 11시까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평생교육체육과장님도 어떻게 찬성을 하시는지?

● 평생교육체육과장 이기석

예. 찬성합니다.

● 고규강 위원

찬성하죠. 그러면 이 조례를 11시까지

하자는 건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그전에.

● 평생교육담당 이종석

평생교육담당 이종석입니다.

상위법의 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 고규강 위원

아니 이거를 만들 적에 11시까지를 제한할 적에 몇 년도에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 평생교육담당 이종석

'88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제가 여기온게 2000년도이기 때문에.....

● 고규강 위원

그전에는 모르십니까?

● 교육국장 반창남

예. 교육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가서 조사해 보니까 '88년도에 조례안이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 본문에 들어있지 않고 부제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관계조항이 그래서 다시 그 후에 개정되어서 본문 속에 삽입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건 언제가요? 다시 본문 속으로 삽입.....

● 교육국장 반창남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년도를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 **고규강 위원**

또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조례를 만들 적에는 상위법적인 위임근거가 있을 적에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요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없어요. 없는데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이 법적으로는 이 조례를 못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위임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 11시까지 제한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 여러 가지 만들 적에 내용을 써놓은 걸 보더라도 공교육의 활성화라든가, 생활지도문제라든가, 사교육비를 줄인다는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거를 지금 11시를 폐지하고 시간을 하루종일 24시간할 수 있게 해놓는다면, 글썽 이게 가뜰이나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까지 폐기를 한다면 공교육이 더 사장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을 시정하라 또 감사를 했을 적에 공무원들의 어떤 불이익이 되지 않느냐, 근데 상정은 분명히 교육청에서 공무원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보류시켜도 감사가 나왔을 적에는 책임을 안져도 되는 게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반창남**

예.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 **고규강 위원**

그래서요 요거를 타 시·도도 5개가 아직 되지 않고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를 했는데 일단은 보류를 해놓고 일괄처리 다음에 할 적에 해놓는게 어떤가?

● **교육국장 반창남**

예.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지방자치법 15조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 제정할 수 있는데 주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할 적에는 법률의 위임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위임근거가 없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을 시키자 그런 말씀이예요.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학원의 교습시간 규제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이상 규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 **고규강 위원**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국장 반창남**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면은 다음에 절차방법을 생각해서 논의해 주셔도 감사한데, 요게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으니까 규

[제147회-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제를 할 수 없다 그것만 좀 이해를 해주셔서 요번 기회에 꼭 위임근거가 없는 것을 그대로 놔둘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규강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이기석

그 조항만 그럼 보류를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괄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규강 위원

지금 과장님은 시간에 관한 것만 보류를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일하시기가 복잡하지 않을까? 다시 통과시킬 적에.

● 평생교육체육과장 이기석

괜찮습니다.

● 고규강 위원

괜찮아요?

그렇게 해드리는 걸로 저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훈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 위원장 김남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의견 계시는 위원님 계시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질의 및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조례심사소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김남훈, 간사 이기수,

위 원 고규강, 성영용, 송대현,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5명

교육국장 반창남,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평생교육체육과장 이기석,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김진성.

제14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2. 12. .

위원장 김 남 훈 *김남훈*

(별첨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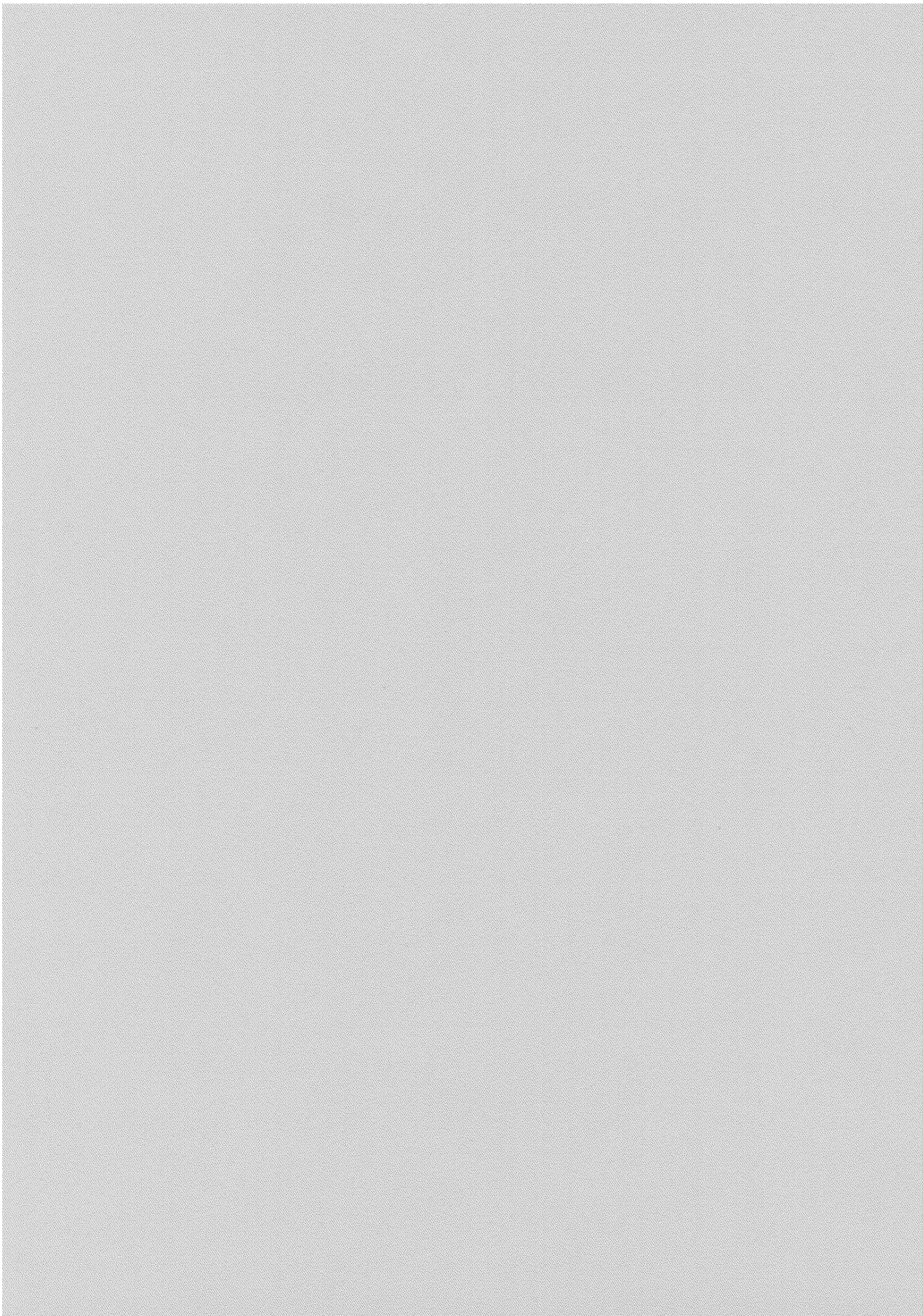
제14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02.11.26. (화) 본회의 종료후~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02.11.28. (목) 14:00~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심사·의결)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심사·의결)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결) 4.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심사·의결)	

第147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豫算・決算小委員會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제14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59

II. 제14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63

III. 부 록

1.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191

2. 서면답변서 193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2년 11월 26일 (화요일) 16시 44분

議事日程 (제14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6시 44분 개회)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소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 이기수 위원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지금 임시 위원장을 맡은 송대헌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제가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송대헌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셨는데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성실히 위원장의 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견

(16시 46분)

● 위원장 송대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견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진옥경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송대헌

진옥경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의가 없으므로 진옥경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간사 진옥경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위원장님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견

(16시 47분)

● 위원장 송대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견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소위원회 활동은 오늘과 11월 28일 2일간으로 하여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8일 10시 제2차 소위원회에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0 출석위원 : 5명

위원장 송대헌, 간사 진옥경,
위 원 고규강, 송대헌, 이기수.

0 출석공무원 : 2명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 부 록

- ▶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2년 11월 28일 (목요일) 10시 02분

議事日程 (제14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附議된 案件

1.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회)

리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대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소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1.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참 조 :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 본회의(별책 3)

● 위원장 송대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 작성의 주관 과장인 기획관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있어서는 요번 예산안을 대충 보니까 추경을 보니까 국고교부금이 대부분이고 또 성립전 예산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들별로 쪽 질의를 하지 않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관계없이 질의를 이렇게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쪽 검토해 보시고 좀더 집행청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별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실 적에는 위원님 성함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훈 위원

예. 위원장님.

● 위원장 송대현

네. 김남훈 위원님 말씀하시죠.

● 김남훈 위원

김남훈 교육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51페이지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8페이지에 해당되는 건데 거기 보면은 학업성취도평가사업비 조정이라고 해서 1억 1,0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당초 예산을 보면 3억 7,00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국고로다가 보조를 했기 때문에 1억 1,0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학업성취도평가사업비 중에서

나머지 2억 6,000만원정도는 우리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게 되는 건가요?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네. 그렇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그러니까 국고에서 일부분만 보조를 해준다?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예. 그렇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근데 이것이 애초에 국고에서 이러한 금액이 지원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사전 연락은 없습니까?

이건 처음서부터 감액을 하고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도리일텐데 다 세워놨다가 이것을 다시 감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임홍빈입니다.

지금 김남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이것이 국고지원금이 사전에 저희들에게 얼마를 지원한다는 그러한 예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단지 이러한 거기 나온 대로 학력고사를 보기 위한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일단 해놓습니다.

그래서 국고의 지원여부는 저희들이 사전에 거기서 지시된다든가 어떤 공문으로 알려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액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 김남훈 위원

1인당 평가사업 금액이 대충 얼마정도 들어가요?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총 인원에서 그냥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 중등교육과장 임흥빈

예. 전체 인원으로도 전부 나옵니다.

●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 반창남입니다.

김남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학력평가비로 예산을 계상해 냈는데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전액 국고보조를 해달라 2차례에 걸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는 어렵고 일부만 보조해준다 약속을 했는데 그게 연도말에 나와서 요번에 감액조치를 했고 1인당 3,500원정도 1회의 평가비가 그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 김남훈 위원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신설학교 다목적교실 소요예산으

로다가 32억 6,000만원정도를 갖다가 청주, 충주, 제천교육청에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항설명서 51페이지 뭐 이렇게 쪽 나왔네요. 그 다음에 제천교육청까지 해서 나왔는데 저희들이 알기는 교육감님이 부임하시고서 다목적교실을 애초에부터 앞으로 신설학교에는 다목적교실을 갖다가 짓도록 하겠다 처음서부터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인지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세워야 했을텐데, 또 하나는 다목적교실을 우리가 교실개념에서 볼 적에 몇 교실을 파악하고 계신지, 또 다목적교실을 갖다가 더 첨가해서 지을적에 학교당 들어가는 소요 예산은 약 얼마가 되는지 요것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김남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설학교 다목적교실이 당초의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유와 각급 학교별 다목적교실 투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에 교육감님이 부임하셔서 가지고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지을 때 처음부터 강당을 같이 지음으로 해서 예산을 절약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교육장님들 회의 때하고 공문을 또 제시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 예산가지고 강당을 다 넣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전부 받아보니까 짓기는 같이 지어서 부지를 절약하고 또 나중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설을 하는데 같이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다 좋아 하시면서도, 다소 그거를 짓는데 따른 예산을 다시 추가로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실무회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가되는 것을 어느 정도를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지역교육장님들이 일반적으로 강당을 별도로 짓는 거에 한 80% 수준 가지면은 충분히 본 공사에 합쳐서 지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 80% 정도의 예산을 지어주되 학급규모나 신축이 가능한 평수의 여건에 따라서 다소의 학교별 차이는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4학급인 학교하고 36학급하는 학교하고의 강당규모가 전체 교실 규모의 적정성에 따라서 다소 틀립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설계해 온 내용이.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신청한 내용의 80%를 우선 주고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으로 줄 수도 있고, 한데 지금 대체적으로 교육장님들 의견은 80% 수준 가지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이 32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저

희들이 그래서 그걸 역으로 지금 김남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전체 금액이 들 경우에는 약 한10억 정도가 절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약 23%로 절감이 되어서 정확하게는 80%지만은 77%정도가 예산이 편성된 걸로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학교 자체를 증·개축하는 학교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현재로는 증·개축 부분은 이후에는 지금 저희들이 확정된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다각적으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증축에 대해서는.....

● 김남훈 위원

학교를 완전히 철거를 하고서 다시 개축하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개축하는 거.

● 김남훈 위원

그런데는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것이 올해는 조금 저희들이 검토가 덜됐습니다.

● 김남훈 위원

알았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대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244억 5,800만원정도가 증액된 예산이 다시 추경에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세출부분을 한번 훑어 보면 물론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증감 비율이 너무 당초 예산에 과다하게 편성됐던지 늘려줄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결국은 부족하게 편성됐던데를 더 늘려줬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마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비율들이 조금 평균에 맞춰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되는 부분과 또 한 가지는 이게 뭐니까? 복지후생비 쪽에 마이너스 물론 이 예산이 결국은 금년 2002년도 12월까지 예산을 다 집행하고 1월 1일되면 다시 회계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때 다시 새 예산에 의해서 써야되겠지만 복지후생비를 감액한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교육청의 도교육청의 예산이 6.1%가 증가된

반면에 지역교육청은 3.3%정도만 증액이 됐습니다.

모든 교육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물론 도교육청예산 중에서는 고등학교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역교육청의 유치원서부터 초·중까지의 교육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그쪽 프로테지를 높였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걸 개괄적인 측면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이기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대체적으로 4가지로 분류하여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감리사안이 주로 대여장학금이라든가 학력고사라든가 또 신설학교의 학교를 다 완성하고 남은 잔액 요런 정도의 감액이 있었습니다.

아까 지금 교육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지금 학력고사문제는 당초에 각 시·도교육청에서 전부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국고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전체의 예산을 국고보조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일괄로 모든걸 주관을 하면 좋은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왜 지역교육청의 각 시·도교육청의 모든 업무를 자기들이 해야되느냐라는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시·도별로 예산을 직접 집행하지 아니하고 저희들한테 그냥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해서 그냥 송금이 되어왔기 때문에 그 돈을 쓰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1억여원이 감액이 되었고, 경서중학교 집행잔액도 지금 10여억원이 남는데 청주시교육청의 증설학급이 저희들이 수용시설상 필요해서 또 그걸로 쓰느라고 감액이 되었고, 대여장학금 부분이 지금 상당 금액이 저희들이 쓰고서 남은 잔액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고 해서 지금 마지막 추경으로 저희들이 보고 대여장학금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별로 증액 사유가 형평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은 사실상 학생수라든가 시설여건이라든가 지역적인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또 국고보조금의 내역이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에 초·중·고별로 예산을 분류를 해볼 때에 특정한 고등학교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골고루 이것이 예산이 편성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수도 틀리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숫자상에 나오는 것은 이기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형평성에 다소 맞지 않으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겠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후생복지비에 대해서 감액한 사유는 저희들이 대여장학금을 지금 공무원들이 쓰고 나중에 반납을 하는 대여제도인데 그것이 저희들이 예산액보다 신청액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불가피하게 감액된 것이고, 또 물론 저희들이 본청 예산이 많이 증액된 내용에는 고등학교 예산이 지금 본청 시설에 본청에서 직접 주관하기 때문에 시설사업 같은 것이 본청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다음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대현

예. 말씀하세요.

● 이기수 위원

저희 도가 인적자원개발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갖고서 2003년도 예산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줬고, 요번에 또 2억이라는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온 거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사용할 수 있는 2억이 한 달밖에 안남은 얘기 아닙니까? 금년예산은 그렇죠?

● 교육국장 반창남

네. 그렇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교육인적 인프라자원 개발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어떤 계획이 한달 동안에 수립되어 있으며 이게 어떻게 시행이 되어 갖고 2억을 다 쓰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 반창남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 가운데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18쪽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인적자원개발 연구과제를 공모를 해서 연구과제 공모에 당선된 분들에게 개발비로 1억 8,000을 지금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20일까지 연구과제 공모를 합니다. 15개 과제인데 15개 과제를 공모를 해서 그 중에 이제 여러 연구소하고 대학에서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교육청의 석·박사선생님들은 인적자원교육발전연구대회를 해서 별도로 저희가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수당으로 연구비로 1억 8,000을 드리고 나머지 인적자원개발추진 운영에 610만원, 인적자원개발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을 집행하도록, 그래서 결과적으로 집행방법은 명시이월이 되지 않

겠는가 그래서 내년 5월까지 1차 공모해서 보고서를 받고 7월까지 교육부에 연구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인적자원개발계획 이게 결국은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할 하지만 컨소시엄으로 되는게 아닙니까? 결국은 대학과 도와 우리 교육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주관하고 나머지도 같이 협력하게끔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갖고서 개발해나가는 계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써 교부 받았는데 이게 내려오으로써 우리 교육예산을 잠식해 들어가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됩니까?

●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부에서 3개 교육청을 연구시범교육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광주하고 부산하고 저희 도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본청 예산을 잠식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리고 먼저 우리가 예산에 보편은 말입니다. 과도 신설하고 거기 직원도 배치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구에 대한 편제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

까? 계획을 집행청에서 계획대로 이렇게 세워나가면서 진행하면 끝나는 겁니까?

편제나 모든 부분을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거친다든지 이렇게 해갖고서 그런 기구를 신설을 둔다든지 그게 결국은 프로젝트가 완료됨과 동시에 종료될 것으로 보는 얘기인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지, 상당히 우리 교육위원 저로서는 이게 한시적인 기구로써 존재했다가 없어질 결로도 봐지는데, 그거는 그냥 다른 컨소시엄된 다른 기관 때문에 그냥 교육청에서 편의상 주관해 갖고서 어느 어느 부서 신설하고 직원 갖다놓고 이렇게 해갖고서 그냥 끝나고 마는 건지, 그 편제를 해갖고서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아 갖고 그 편제가 한시적으로라도 있어 갖고 해야지 될 건지, 그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보통교육차원에서 그냥 집행청에서 끌고감으로써 끝나는 얘기입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 교육국장 반창남

예. 제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인적자원개발부로 부자체가 성격이 변화되고 또 장관에서 부총리로 승격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나라의 전 4,600만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을 목표로 모든 업무를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에

걸맞는 기구와 조직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총정원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다시 별도로 교육청의 조직을 개편하고 규칙을 만들고 그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총정원 범위내에서 현재 초등교육과 안에 인적자원개발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교육부가 승인하는 대로 인적자원개발과를 조직을 하고 그에 걸맞는 인력수급도 만들어 놓고 해서 보다 광범위하게 충청북도에 걸맞는 인적자원개발을 저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런데 그걸 그렇게 추진할 계획인데 그거는 그냥 집행청에서 적당히 편제두고 과두고 이렇게 함으로 끝나는 건지 우리 교육위원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건지, 또 거기에 있다면 총정원제에 묶여 갖고서 우리직원이 만약 총정원이 10명인데 10명이 다른 업무를 해야할 부분인데 총원 안 시켜줘 놓고서 그 부분으로 인력을 편제를 바꿔줬을 때, 그만큼 우리 충북교육에 일하실 분에 대한 인원의 감소가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그건 어떻게.....

● 교육국장 반창남

예. 당초 그러한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저희 자체가 안되고 교육부의 시·

도교육청편제조직규정에 개정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각 시·도에서 공히 개정건의도 하고 인원보충도 요청을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기수 위원님께서 인적자원개발 부서 즉 기관의 부서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그에 따른 시행령을 지금 아마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거기에 보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부서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부차원에서 정원을 주면은 과단위가 가능할 것이고, 정부차원에서 자체 정원의 범위내에서 하라고 하면은 그거는 도지사는 도지사 나름대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기관장이 과로 둘 것인지 계로 둘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과로 승격이 나올 수 있도록 교육부에 어떤 지침이 있는 경우 아니면 교육감께서 과단위로 하게 되면은 반드시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과단위이기 때문에 그러나 담당자만 현재와 같이 존속을 하거나 과밑에 두는 조직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할 수 있기 때

문에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지금 이기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인적자원부에서는 서기관급에 해당하는 장학관에 해당하는 과를 두는 것을 아마 입법취지로 생각하고 입법을 예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이라고 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도지사는 도지사대로 또 이걸 해야되고 교육감은 교육감대로 해야되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지금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법령이 공포되고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다시 그때 가서 교육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예. 왜 제가 그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얘기는 사실 모든 층복에 있는 기관들에서 같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게 우리는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생까지 보통 교육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주로 맡아 갖고 기르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겠고, 또한가지는 대학에서도 또 이게 필요한 얘기입니다. 대학에서 책임져야할 큰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에서 이렇고 이렇게 된 얘기인데 이걸 우리 혼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좋은 계기지만

은 너희가 다해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 우리 보통교육에서 너무 과중한 부담을 지워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걱정에서입니다.

첫째, 인원도 결국은 더 안주고서 그 인원중에서 얼마 부분을 교육감이 조정해 갖고서 만약 10명이면 10명이라는 직원을 그쪽에 업무에 담당하게끔 한다든지, 또는 교육예산도 크게 더 주는 거 없이 우리 충북교육 예산 속에서 그런 업무를 다만 얼마라도 더 들어가게끔 해서 추진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발생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지요.

결국은 이런 좋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한다면 과를 신설하고 그만한 인원을 더주고 예산도 별도로 줘갖고서 모든 게 원만하게 되어야만 되는 얘기지, 이걸 가지고서 우리 그런 뒷받침도 해주지 않고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인원도 있는 인원 중에서 뽑아 갖고 다만 2억이나 얼마큼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예산도 우리가 참 예산서에서 보면 있지만은 그게 우리 교육예산도 그쪽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상황이 생겨서 안되겠다는 얘기에서 제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간사 진옥경**

거기에 관련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인적자원개발에 관련한 사업이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반창남**

예. 교육국장입니다.

내년도 7월까지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억에 대한 시범교육청의 연구보고서를 내년 7월말까지 보고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간사 진옥경**

그러면 집행은 그러면은 지금 2억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내년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란 말씀이신가요?

● **교육국장 반창남**

네. 명시이월을 해서 집행토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간사 진옥경**

근데 여기 명시이월 사업에.....

● **교육국장 반창남**

아,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죄송합니다.

● **간사 진옥경**

명시이월 사업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것들이 사고이월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죠.

● **교육국장 반창남**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간사 진옥경**

좀 뭐랄까 지금 현재 계획단계라서 그런지 몰라도 돈만 내려와 있고 거의 이런 상세한 계획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만 지금 통과가 되어 있고 계획은 지금 수립중이신가요?

● **교육국장 반창남**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대현**

이기수 위원님 더 질문 계십니까?

● **이기수 위원**

뒤에 또 하겠습니까.

● **위원장 송대현**

예. 또 다른 위원님?

고규강 위원님 말씀하시죠.

● **고규강 위원**

고규강 위원입니다.

각 관리국장님에게 두가지만 묻겠어요.

추경예산에 놓여준 교사들 사택에 대해서 올라온 것 없습니까? 다른데서는 용화하고 황간하고 매포 그 나머지는 사택보수인데 다른데 올라온데 없어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요것이 지역별로 놓여준주택 교사들 사택을 짓게된 동기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놓여준발전 계획에 의해서 수요조사를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이 지역교육장님들로부터 자료를 받기를 다시 신축해야될 관사, 그 다음에 개축해야될 관사, 보수해야될 관사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교육부에 그걸 올렸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신축하고 보수의 예산은 나오고 개축예산은 지금 저희들에게 시달되지 않았습나다.

단 조건이 곧 사용을 하되 신축이나 보수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변동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다시 한번 교육장님들한테 의견을 들었더니 어떤데는 교육장님들이 뭐 칸수를 늘려 달라는데도 있고 어떤데는 또 보수를 좀더 많이 해달라는데도 있고 해서 그거를 신청을 받아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육장님들 의견은 다 반영이 됐되 모든 지역에 가지는 않은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 **고규강 위원**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충청북도는 교사가 모자라 가지고 58세까지 뽑다보니까타 시·도에서 연령이 높은 분들이 온 분들이 시골 놓여촌에 많이 계시더라구요. 또 경기도나 타 시·도에 접경해 있는 지역에 있는 놓여촌학교는 타 시·도에서 온 분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천상 사택이

없으므로 해서 자취를 할 방도 없고 하숙할 때도 없고 그런 어려운 여건인데, 어느 교육장님 두 분이 사택이 시급하다고 교사들이 어디가 잠자고 밥 먹을 곳이 없다 이런데가 저한테는 얘기했으면서 추경 여기에다 올리지 않았네요. 그죠. 들어온데가 없습니까? 여기말고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요거를 할 때는 지역교육청의 의견을 2차례 들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설령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누락된데가 있다면, 저희들이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필요성이 있다면 국고보조금이 시달이 안되면 자체 예산이라도 투자를 해서 선생님들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힘써보겠습니다.

● 고규강 위원

네. 감사합니다.

또 한가지는 교육국장님한테 말씀을 들려야겠네.

얼마 전에 여기 왔다가 인터넷방송국 가동을 하기 전에 실험하는 것을 가봤습니다. 인터넷방송국에 장비도 최첨단으로 모든 장비가 설치가 됐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과학교육원 여기에 소프트웨어 제작비로 1억 7,000 교육용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계상이 됐고, 그래서 제 생각엔 먼

저도 말씀 드렸습시다라는 이 예산이 모자라면 증액을 해서라도 농촌과 도시간에 학력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은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이라든가 여기 인터넷방송국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수업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교육청에서 제시해 준다면, 구태여 공교육이 무너질 필요도 없고 구태여 사교육비가 증액될 필요도 없고 또 농촌학생들이라고 도시에서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교육의 기회균등이 부족할 리 없고, 그래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는 건 돈을 증액을 해서라도 이것이 이제 다른 민간업체가 한 60개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충남같은 경우는 자체예산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어떠한 회사에 잘되어 있는 것을 특기적성검 초·중등 모든 교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특기적성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실시하는 도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곳에 하는 곳은 양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터넷방송국이 개설됐다면은 우리도 우수한 교사를 교과목마다 배치를 해서 어떠한 보수를 주더라도 일정한 시간 1시간 오후에 1시간 정도씩 학생들과 양방향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체제로 된다면, 소프트웨어 자꾸만 만들어 가지고 뭐 이런 걸 하는 것보다 그걸 어느정도 구축을 한 다음에

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수업시간이나 방과후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 충청북도 인터넷방송국에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내년도까지는 완전히 이게 되는 건가 그걸 말씀해주세요.

● **교육국장 반창남**

예. 교육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방송국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교수·학습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원에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육정보지원센터를 운영을 해서 우리 인터넷방송국하고 같이 3체제가 연계되고 아울러 EBS교육방송망,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캐리스(KERIS)하고 연계해서 다 채널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도움실, 그 다음에 과제해결실 과제해결방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료탐색방 그래서 언제 어느때 무슨 교과를 공부하고 싶다 그 다음에 과제를 해결하고 싶다 자료를 찾고 싶다 이것이 되도록 내년 3월말까지 이것이 저희가 개통도 하고 체제도 갖추고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고규강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쌍방향으로 그렇게 되려면 내년 3월까지 안돼요. 제가 본 견지로는 예를 들면은 지금 영어특기적성을 500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면은 500학교에서 실시하면서 여기에 선생님이 있어 가지고 인터넷방송국에 학생들이 모여 앉았을 적에 교사가 영상매체로 보이는 거죠, 실제로 가리키는 거니까 애들하고 질문하면서 저기 통신대학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게 안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 **교육국장 반창남**

그래서 EBS방송하고 같이 그 연계해야 돼요. 저희가 그걸 전체를 감당하기는 저희 시스템 가지고는 100학교 내지 110학교하고만 상호 연결되지 그 이상은 저희가 어렵게 되어 있어서 국가 전체적으로 이게 네트워크화 해야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고규강 위원**

그래서 돈을 더 들여서라도 부산이 지금 거진 반 다된 단계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은 워낙 돈도 많이 들여가지고 정보화센터를 크게 지은 것 같은데 충청북도도 그런 방향으로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예산도 절감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을 학원에 갈 필요도 없고 엄청난 예산이 줄어드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반창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대현

고규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 간사 진옥경

진옥경 위원입니다.

각종 현안사업 수요지원이 있습니다.

도서실이라든지 다목적실에 관련한 지원 내역이 어떠한 선정 근거에 의해서 이런 학교들이 선정이 되는지 수요자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투명한 운영같은 것들이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으신지 여쭙보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진옥경 위원님께서 도서실이나 다목적실의 선정이 수요자들의 의견을 듣는 등 어떤 형평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그 선정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다목적실이 과거에 강당으로 불리었습니다마는 지금 다목적실로 불리는데 다목적실이 종전까지는 우리 도내에 약 한 22.7% 정도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그런데 요 다목적실이 실질적인 기본

시설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설비기준령이 있을 때는 권장 시설로 되어 있었던 건데 요즘에 7차 교육과정에 대비해서 상당히 다양한 수업을 해야될 그런 형편이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으로만 지금 다목적실을 저희들이 건축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그것을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요구가 오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각 지역별, 아니면은 학교별, 학생수별, 또 과거에 그 지역의 학생수의 변동사항, 앞으로의 학생수의 증감사항, 또 지역적으로 그 지역에 다목적실에 대응하는 여럿이 모일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주민들도 모일 수는 장소의 공간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과거에 그 지역이나 이런 경우에 다목적실이 좀 낡고 또 규모가 소규모한 거라도 있는 지역에는 가급적이면 그것을 지어주지 않고, 또 지금 현재 있는 학생수가 다소 적더라도 그 지역 여건상 또 필요한 그런 경우에는 우선 순위를 두어서 선정을 하고 그 뒤에 올부터 다목적실보다는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도서관을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서부터는 강당을 지양하고 도서관 쪽으로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로 강당이 있는대를 제외하고 강당이 없는 곳 중에서 교육감님께서 요거를 고민을 하시다가 초·중·고별로 바란스를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충주지역에서 충주여고가 강당이 없고 도서관이 인문학교고 그렇기 때문에 충주여고를 아마 선정하신 것 같고, 예를 들면 그런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역별로 강당이 없는 지역에 도서관을 설치할 하되 초·중·고별로 바란스를 맞추고 요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명쾌하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꼭 학생수로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으로 이렇게 나눈다든가 요러한 형평은 맞추기가 다소 저희들이 미미했지 않나 저희들 자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다목적실을 도서관으로 대치해서 오는 예산의 규모는 거의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다목적실이 그 학교규모로 봐서 8억이 온다 그러면 도서관을 지을 때도 8억이 옵니다. 그러면은 도서관 내에는 예를 들면 1층에는 세미나실이 있어서 극장식으로 이렇게 의자까지 다 주고 환등기라든가 이런 걸 다 활용할 수 있어서 세미나라든가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2층에는 열람실과 도서관 실 또 컴퓨터실 이런 것을 주어서 독서내

지는 정보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3층에는 다목적실 개념으로 큰공간을 활용해서 전체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다목적인 도서관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진옥경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서관 다목적실 신축에 관련해서는 세명고등학교는 올안으로 신축이 완료되나요? 다른 학교는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세명고등학교는 지금 그게 빠져있는 것 같거든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세명고등학교는 저희들이 7차 교육과정에 교실을 몇 건을 주었었는데 그것이 설계되는 과정에서 이 특별교부금이 전부 다 공립학교만 줄 수 없기 때문에 사립학교를 하나 넣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을.

그러던 중에 이미 7차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업자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왔기 때문에 학교 당국에서 7차 교육과정 설계하고 다목적실을 같이 설계해서 부지를 절약을 하겠다 그렇게 제안이 와서, 저희들이 어차피 7차 교육과정

도 올해 완성이 안되고 내년 봄부터 시작 될 바에야 그러면 부지를 활용하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기 편하게 그러면 설계를 같이 해주십사 단 그 설계에 추가되는 경비는 자체 부담으로 하고 우리가 보조금을 더 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서 다른데 보다 상당히 서둘러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케도 저희들이 금액이 크다보니까 위원님들의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 남아 있고, 그 과정 이전에 그래서 설계비만을 저희들이 선집행하는 걸로 해서 설계비만을 뒀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경우에도 저희들이 아무케도 저희들이 공고기간도 있고 또 입찰기간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소 납품기간이 연내에 납품이 돼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안나오는 학교가 몇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는 명시이월을 했고 세명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하던 업자가 됐는지는 몰라도 조금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 간사 진옥경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접수입이지만 액수는 별로 크지 않은데 어떤 것들이 지금 접수입 형태로 들어오게 되는지 또 사용료수입은 연말에 들어오게 되는가요? 그래 지금 여기에 추경에 다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항별설명서 35페이지 같은 경우에 지역교육청별로 기타사용료수입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생산물 매각대라든지 또 변상금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어떠한 것들을 주로 수입원으로 쓰시는지 요런 것들을 상세하게 알 수가 있을까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은 진옥경 위원님께서 생산매각대라든가 또 그 외의 접수입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장 정확한 수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려는 가장 바람직한데, 생산매각대 같은 경우는 주로 농·공고 쪽에서 농사를 짓거나 어떤 활용판매가 가능한 공산품을 만들었을 때 그 판매금액을 국가 돈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다시 특별회계에 집어 넣은 액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던 것보다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다소 줄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야영장 같은데 입장수입이라든가 도서관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때 그때의 학생수라든가 그 수요자가 증감이 될 때 마다 입장수입이라든가 이것이 변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변동된 것만큼을 추가에 산에 집어 넣게 되었고 또한 임대료 부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임대를 사실상 연초에 다 계약을 못하고 중간에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전년도 9월달에 편성을 하는데 기간이 만료되어서 4월이나 5월이나 이런 때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요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런 경우에 임대가격이 조금 늘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 감사 진옥경

변상금은 뭔가요? 변상금.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변상금은 우리가 감사를 나가거나 할 경우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다보면 업자나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관리주의를 다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일을 시공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변상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 것을 감사에 지적되거나 해서 나오는 경우에 금액이 그때 그때 확정되기 때문에 다소 틀려지고.....

● 감사 진옥경

위약금하고 변상금은 다른가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위약금은 공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기간이 딱 있는데 그 기간을 넘겼어요, 그러면 계약할 당시에 지체상금을 계약조항에 넣게 됩니다. 1일을 넘기는데

얼마씩 그거를 저희들이 지체상금으로 애기합니다.

● 감사 진옥경

변상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변상금하고 지체상금은 조금 틀립니다. 변상금은 아까 마냥 실질적으로 변상한 것 변상한 것이 변상금이고 지체상금은 납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납기 지연에 따른 위약금입니다, 쉽게말하면.

● 감사 진옥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대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죠.

● 성영용 위원

성영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직원사택 임대료가 대가료에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잡수입에 포함되어 있나요?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대가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성영용 위원

대가료에 포함되니까? 대가료면 지금 단양 휴교된 학교까지 다 포함되어서 대가료에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 기획관리과장 안응균

실제로 임대수입이 들어올 때만 대가료로 잡고 있습니다.

● 성영웅 위원

참고삼아서 교직원사택 임대현황 관계를 좀 하나 자료를 요구해도 괜찮겠습니까?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 기획관리과장 안응균

네. 알겠습니다.

● 성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대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이기수 위원

송위원님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대현

예. 이기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기수 위원

이기수 위원입니다.

마지막 2,3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옥천상고 다목적교실 신축계획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육위원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방문을 했는데 특별교부금으로

써 8억 7,000을 교부금으로 받고 자체 예산으로써 1억 5,900만원정도 해갖고 아마 10억 2,900만원정도가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규모는 한 300명 정도의 규모로 다목적 강당을 짓는데 우리가 학교를 들어서면서 교육위원들이 공히 느꼈던 것이 너무 운동장이 비좁은 것 같은 느낌을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바로 운동장 옆에 1,200평이라는 임야가 있어 갖고서 아마 그 임야가 교육부지고 또 자연녹지 이렇게 되어 있어 갖고서 그걸 정리를 해갖고서 아마 강당을 지으려고 예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들이 현장에서 산 위까지 올라가 경계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계획은 부지정리로 토목공사로 1억 5,900만원이 편성이 된 모양 같은데 우리 교육위원들 지적은 뭐냐하면은, 운동장이 가뜩이나 비좁은데 힘이 들지만 토목공사에 경비가 더 들지만은 임야로 된 1,200평정도인 그 임야를 좀 절개해서 그쪽으로 경계까지 바짝 도서관을 신축한다면, 학교 즉 기존의 운동장까지를 점유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무자는 그게 좋은 의견 같습니다. 하지만은 실제 계획은 운동장에 포함된 토목공사비 1억 5,900만원

그놈으로 해갖고서 진행중이고 설계가 들어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그렇겠지만 우리가 교육위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갖고서 수공을 하고서도 실제 계획의 진행은 다른 쪽으로 그냥 교육위원님들 말씀 옳습니다. 그렇지만은 진행만은 그대로 한다면 그거 교육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좋은 의견 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시 설계변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이걸 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경계선까지 부지를 정리해 갖고서 거기다 신축하는 것이 좋지 하겠느냐 하는 주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권고사항 중에 그쪽 답변이 옥천군수가 1억을 보조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군의회에 통과는 안됐습니다마는 통과가 된다면 그 1억을 보조한다면 그런 예산도 늘어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 좀 지금이라도 말입니다. 설계라든가 이런 걸 중지시켜 갖고서 한번 이거 해놓는다면 이게 50년, 100년 가야할 건데 말이에요. 처음에 1억이든지 2억 이걸 아까다 보든지 하면 이상한 건물을 지어 놓고 평생 이게 불편한 이런 시설을 하게끔 되는 거니까, 그거 실무자들은 거기서 수공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리국장님이

나 다시 검토하셔 갖고서 그걸 그별 용의는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옥천상고 다목적실의 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지금 운동장에 사실상 다목적실을 짓는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야부지에 그거를 좀 하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한 4억내지 5억 들어갑니다. 그거를 완전히 절개를 할 경우에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어려워져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1,2,3안을 놓고 검토를 한 결과,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운동장을 침범하지 않는 것을 제일 원칙으로 하면서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완전 절개를 하지 아니하고 운동장 경계로부터 가급적이면 운동장을 침식을 덜하는 방향으로 해서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금액이 직접 토목기사들이 나가서 본 것이 한 1억 5,900정도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낙찰차액을 이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운동장

침범을 적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옥천군수가 옥천군으로 보조해 주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상당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군수나 아니면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보조를 해 주겠다라고 하는 건축이 거의 보조가 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단양의 모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을 5월 10일날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해주어서 설계를 했는데 지금까지 설계를 못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예산을 군에서 2억을 주겠다 도지사가 1억을 주겠다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군의 예산서 편성할 때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 안 들어가 있고 도의 예산 편성할 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얘기하거나 학부형들이 얘기하고 교장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2억 줄테니까 교육청에서 2억보태서 4억공사는 8억관계 공사 설계해 달라 지어 달라, 그렇게 할 경우에 저희들이 집행상에 위원님들이 열심히 이렇게 예산을 심의해주셨는데 심의해준 예산 오버해서 설계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진천 광혜원고등학교도 그러한 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일정한 금

액이 와가지고 일정한 평수로 지으라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까지 다 맡아 놔는데, 지역주민들 얘기는 어느 의원이 2억주고 어느 의원이 1억 가지고 온다 어느 군수가 얼마준다는 얘기를 수없이 하고 여기도 찾아오고 해서 업무를 못하게 합니다.

사실상 그렇다면은 제가 공증을 붙여라 그렇다면 예산이 안왔더라도 위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내가 짓겠다 했는데 공증은 또 안해와요.

그래서 옥천군수님께서 1억을 보조를 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어차피 강당 다 목적실은 학생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보태서라도 하여튼 크게 짓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다 각적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회계연도라는 것을 저희들이 또 무시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유기적으로 그것을 잘 감안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또 1억을 보조를 받게 되면 어떠한 규모로 하게 되는지는 저희들이 옥천군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국장님이 여러번 속아보셔 갖고서 또 결국은 옥천군수도 이거 실언하는 거 아

니나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데, 다른 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 군수가 또 공헌한 얘기고 한거니까 접촉을 해갖고서 어떻게든 1억을 받아내 갖고 우리가 시행하시도록 하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국장님도 예산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시는 답변이겠지만 되도록이면 덜 침범한다는 얘기가 상당히 모호한 얘기에요. 그게 확실한 표현이 돼야지 덜 이라는 얘기가 어느 정도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러고 보니까 그거는 운동장의 면적을 덜 침범한다는 얘기는 우리 국장님이 보셨을 때는 덜 쪽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 얘기고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침범한 얘기고 그런 거니까 객관성이 없는 얘기니까 안 침범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셔 갖고서 하고, 또 한가지는 그걸 토목공사를 많이 돈이 들어가더라도 밀어부치면 사실 그만큼 그 뒤로 바깥 경계선에 짓던지 하면 그 만큼 운동장 넓게 쓸 수 있는 얘기고 또 앞으로 짓는다고 해서 남은 평수는 사장할 수밖에 없어요. 뭘니까? 건물에 그림자지고 쓸 수 없는 땅이 되는 거니까 이왕 그거 하실 때는 과감하게 생각해서 갖고서 최대한도로 부지를 바깥으로 내려서 깎아 갖고서 설립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국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시고 또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은 제가 도서관장을 대학에서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해 갖고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제가 참 많이 합니다.

지금 학교도서관을 7차 교육과정 때문에 학교마다 이렇게 건립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국장님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감사할 때도 사서교사문제를 질의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억에는 충청북도에 1명인가 1명도 없던가 해 갖고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지금 도서관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실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도서관을 활성화 해야죠. 학교에서 가장 심장부가 도서관이니까 근데 이게 3,210만원 중에서 학부모교육이나 학운위원 대상교육에 2,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런 것 좀 아꼈다가 말입니다. 사실 물론 학부모들한테 아주 도우미로서 사서교사가 배치안됐을 경우 사서업무나 모든 도서관에 대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이 필요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바로 이제 교육부에서 사서교사 충원 못하게 된다면 열람, 사서 모든 걸 관리

이런 걸 책임질 수 있는 인력이 꼭 필요한데, 이거 없을 경우는 학부모들 통해서 도우미들을 모집해 갖고서 관리해야 될 텐데 그냥 학부모하고 학운위원들 교육대상은 2,200만원씩 이걸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이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됩니까? 그거.

● 교육국장 반창남

예.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으로 계신 송대헌 위원님이 경영하시는 청주시지역사회협의회도 교육부에서 1,000만원이 특별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12월 14일날 부총리를 모시고 학교도서관 활성화 또 주민 참여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세미나도 하고 독서퀴즈운동도 하고 독서퀴즈왕대회 여러 가지 대회를 합니다.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부총리가 역점으로 하시는 사업이 입문사회과정의 기초를 다지고, 그 다음에 과학정보교육 이 두가지 시스템인데 입문정보교육에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사랑할 때 물건을 사주고 하는 것보다는 생일날 책을 한 두권 사 가지고 읽고, 그 다음에

읽은 책을 학교에 기증하는 이런 운동을 펼치도록 강조하고 계셔서 저희가 학부모한 4,500명을 연수·연찬을 하는 것은 그런 쪽의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기증운동을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학생들이 책임는 분위기를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그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저희가 교육부특별교부금 3,210만원이 내려온 것도 그런 쪽의 연수를 통해서 가지고 기본 책임기운동, 책기증운동을 확산하려는 그런 기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마지막으로 지방채상환 매년 지방채상환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방채에 대한 상환은 어떤 재정규모라든가 이런 걸 봐 갖고서 적당한 규모로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 갖고서 그걸 완제할 것이냐라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겁니까? 그 한 해를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거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니까 지방채상환을 해도 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서 지방채상환을 하는 겁니까?

그 얘기와 또 한가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채상환을 한 거에 대한 사실 명퇴금이나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100% 이자 원금을 뚫니까? 보조한다는 그런 약속하

에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시행되고 있는 건가 그 2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채를 이제 학교통·폐합 이라든가 아니면 부족교원들 퇴직교원들 명퇴금이라든가 이런 재원 때문에 약 한 1,120억정도의 기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금 원금이 자가 전액 국고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부에서 지금 기채상환 기간을 2008년까지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의 소요되는 경비를 기채승인한 액의 비례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매년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시기나 규모를 어떻게 정하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요것은 저희들이 당초 연도별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환계획이 있는데 국가에서는 조기에 상환하면 조기에 상환했다 하더라도 당초에 정부에서 상환해 주는 것만큼 절약된 이자까지를 전부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예산의 여유가 있을 경우 연말에 당초의 예산보다는 조금 더 해서 예산으로 일단 상환을 하고 그 상환원금과 그 상환 안했을 때까지의 이자 요것까지를 전부 다시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도보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마다 도세가 열악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들이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전국 추세를 봐가면서 다른 시·도의 기채상환이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신속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된 것도 교육부에서 하달된 금액을 추경에 세워 주시면은 저희들이 요거는 조기에 상환하는 그런 금액이 지금 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이상 질의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대현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하고 또 집행청의 성의있는 답변으로 우리 추경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응답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했던 가운데 특히 몇 가지를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요번 추경에서 다목적교실이나 도서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많이 있었습

니다.

또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와서 짓는 다목적교실이나 도서관이 시·군간 또 초·중·고간 편중되지 않고 이들이 설립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집행청에서 해주십사 또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의 실정, 현황도 파악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 균형잡힌 예산편성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목적교실에 대해서 신축이나 전면 개축시에는 교육감님도 말씀이 계신 것처럼 다목적교실 포함해서 설계가 됨으로써의 예산절감이라든가 또 교육적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는 아까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초·중·고 예산편성에 균형이 더욱 예산편성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초·중·간에 균형있는 예산편성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 점도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적자원개발시범지역 운영계획에 따른 기구라든가 예산운영이라든가 인원이란가 또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거

라든가 사고이월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위원회도 충북교육에 교육발전의 한 축이라고 파트너라고 분명히 생각한다면 이러한 계획들을 완성단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간보고 형태로라도 좀 보고를 해 주셔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다 이해가 됐다면 오늘 논의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교육국장님 앞으로 인적자원개발시범지역 운영계획에 대한 지금 준비과정이라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반창남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대현

그러한 문제는 비단 그것뿐만 아니고 오늘 아침 한빛일보를 딱 보면서도 학생문화단지 설립 가시화, 도교육청 청주 산남동에 1만 8,000㎡ 재추진 이렇게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좀 교육위원들이 당혹감이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교육위원들이 아는 부분하고 집행청의 우리 국장님들을 통해서 소상하게 계획된 부분을 아는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는 사실하고 또 실제 내용 이대로 가시화가 됐느냐 하는 이 부분을 들어볼 적에는 다른 부분이 있거든

요. 이런 쪽에서 앞으로 소소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알리는 그런 생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중요한 교육정책 중복교육이 나가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중간 단계라도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의 활동하는데 큰 참고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까 사택문제가 나왔는데 미처 교육장님들이 파악을 못해서 보고가 안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다시 앞으로 보고를 받아서 자체 재원으로라도 이걸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가리키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안정적으로 거주가 되어야 됩니다.

계속 추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육위원들이 현장방문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일과성으로 그쳐서 안된다 하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옥천상고를 저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다목적교실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시설을 하면서 물론 교육예산이라고 하는 돈주머니 때문에 늘 문제가 됩니다마는 좀 100년 이상을 내다보고 한번 지어놓은 건물은 이 다음에 30년이나 40년에 후회하지 않고 뜯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애초에 좀 설계도 하시고 이왕 지을 적에는 그렇게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시대가 빨리 변하거든요, 교육환경이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지어놓고 나서 한번 뜯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어제 옥천상고에 가서도 규모라든가 볼 적에 한쪽에만 스탠드가 있고 한쪽에는 없는 것으로 8억 3,000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규모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논의됐던 부분은 2004년에 전국체전이 충북에 유치된다면 옥천에 잘하는 배구나 농구를 겸해서 할 수 있는 체육 다목적교실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려면 양쪽에 스탠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논의됐고, 그러기 위해서 군수가 1억을 준다면 8억 3,000에다가 1억 보태서 9억 3,000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아까 기획관리국장님 말씀대로 말만 풍성하지 돈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 공감입니다. 돈을 정말로 군수주머니에서 나오는 지 의문이 갑니다마는 12월 중순께 군의회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12월 중순에 군의회를 해서 1억 준다는게 확정되면 한 1억 더 보태서 확정되니까 9억 3,000만원으로 양쪽에 스탠드를 넣어서 우리가 아주 훌륭한 다목적교실을 지을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

[제147회-제2차 예·결산소위원회]

드리고,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요즘 열심히 다닙니다. 다녀서 드리는 말씀을 충분히 검토 하셔서 일리가 있다고 할 때는 반드시 교육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 심도있는 질문 감사드리고요 거듭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이 필요하신가요?

● 이기수 위원

계수조정을 위해서 한 5분정도.

● 위원장 송대현

그렇습니까?

한 5분만 계수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위원장 송대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

안은 원안대로 하여 세입·세출 예산 각각 1조 582억 2,193만 2,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소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추경예산안 편성에 애쓰신 집행청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소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아울러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송대현, 간사 진옥경,

위 원 고규강, 성영웅, 송대현,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9명

교육국장 반창남,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초등교육과장 정무,

중등교육과장 임흥빈,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교육정화과장 박상환,

총무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 부 록

- ▶ 서면답변서(별첨 2)

제14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2. 12. .

위원장

송대헌



(별첨 1)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4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시	부의안건	비고
'02.11.26. (화) 조례심사 종료후~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02.11.28. (목) 10:00~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결)	

(별첨 2)

서 면 답 변 서

<성영용 위원님 요구 자료>

관사 이용 현황

관사 형태별 현황(동수)

단독	연립형	아파트	계	비 고
620	27	41	688	

관사 형태별 현황(호수)

단독	연립형	아파트	계	비 고
620	103	41	764	

관사 거주 현황(호수)

공무원	민간인	계	비 거 주				비 고
			희망자없음	노 후	가 타	계	
487	161	648	80	29	7	116	

관사 지역별 이용자 현황

2002.9.30현재

지역	구분	구조(동)			거주(호)			비거주(호)				
		단독	연립	아파트	소계	공무원	민간	소계	희망자없음	노후	기타	소계
청주	일반관사	6		8	14	11	1	12	2			2
	공동숙사				0			0				0
	폐교관사				0			0				0
	소계	6	0	8	14	11	1	12	2	0	0	2
충주	일반관사	49		6	55	35	6	41	12	2		14
	공동숙사				0			0				0
	폐교관사	23			23		21	21	2			2
	소계	72	0	6	78	35	27	62	14	2	0	16
제천	일반관사	53	2	2	57	44		44	8	3	2	13
	공동숙사	12	2		14	31		31				0
	폐교관사	32			32	2	19	21	7	4		11
	소계	97	4	2	103	77	19	96	15	7	2	24
청원	일반관사	7			7	3		3	3	1		4
	공동숙사				0			0				0
	폐교관사	5			5		4	4			1	1
	소계	12	0	0	12	3	4	7	3	1	1	5
보은	일반관사	35			35	26	3	29	3	2	1	6
	공동숙사		2		2	10		10				0
	폐교관사	20			20		14	14		4	2	6
	소계	55	2	0	57	36	17	53	3	6	3	12
옥천	일반관사	29	1	3	33	26	1	27	3	3		6
	공동숙사		1		1	10		10				0
	폐교관사	17			17	2	15	17				0
	소계	46	2	3	51	38	16	54	3	3	0	6
영동	일반관사	40	2	2	44	43		43		1		1
	공동숙사		10	9	19	19		19				0
	폐교관사	33			33		22	22	10		1	11
	소계	73	12	11	96	62	22	84	10	1	1	12
진천	일반관사	28		3	31	29		29		2		2
	공동숙사											0
	폐교관사	7			7	1	5	6		1		1
	소계	35	0	3	38	30	5	35	0	3	0	3
괴산	일반관사	45		1	46	34	2	36	10			10
	공동숙사				0			0				0
	폐교관사	18			18	1	13	14	4			4
	소계	63	0	1	64	35	15	50	14	0	0	14
음성	일반관사	42		1	43	39	1	40	3			3
	공동숙사	1	1		2	11		11				0
	폐교관사	8			8		8	8				0
	소계	51	1	1	53	50	9	59	3	0	0	3
단양	일반관사	75	3	6	84	72		72	6	6		12
	공동숙사	2	3		5	38		38				0
	폐교관사	33			33		26	26	7			7
	소계	110	6	6	122	110	26	136	13	6	0	19
일반관사		409	8	32	449	362	14	376	50	20	3	73
공동숙사		15	19	9	43	119	0	119	0	0	0	0
폐교관사		196	0	0	196	6	147	153	30	9	4	43
합계		620	27	41	688	487	161	648	80	29	7	116